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결과 보고서

중남미국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한 콜 활용방안 연구

단기 개인훈련

년 월

관 세 청

김 민 희

<u>차 례</u>

| 국외훈련개요 | 4 |
|----------------------------|------------|
| 훈련기관개요 | 5 |
| I. 서론 ······ | 8 |
| 1. 훈련목적 | 8 |
| 2. 훈련과제의 필요성 | 8 |
| 3. 훈련국 및 훈련기관 선정의 적합성 | 9 |
| 1) 콜롬비아 국가정보 | 9 |
| 2) 훈련국 선정배경] | 13 |
| 3) 훈련기관 선정배경] | L5 |
| 4. 훈련의 주요내용] | <u>1</u> 6 |
| | |
| Ⅱ. 본 론 | 18 |
| 1. 콜롬비아의 최근 경제현황] | 18 |
| 1) 콜롬비아 및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경제현황] | 18 |
| 2) 콜롬비아 대외무역 현황 2 | 20 |
| 3)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현황 2 | 22 |
| 4)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 2 | 25 |
| 5) 콜롬비아의 금융시스템 구조 3 | 31 |
| | |
| 2. 콜롬비아 통관제도 3 | 34 |
| 1)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3 | 34 |
| 2) 콜롬비아 수입통관시스템 4 | 12 |
| 3) 콜롬비아 수출통관시스템 5 | 59 |

| 3. 한국-콜롬비아 FTA ······· | 63 |
|---|-----|
| 1)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 63 |
| 2) 한국-콜롬비아 FTA의 주요내용 | 64 |
| 3) 한-콜 FTA 발효 이후 추진성과 | 67 |
| 4. 태평양동맹 | 72 |
| 1) 태평양동맹 현황 ····· | 72 |
| 2) 한국과 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교역현황 | 79 |
| 3) 태평양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활용방안 | 84 |
| Ⅲ. 결론 ··································· | 88 |
| 1. 콜롬비아 현지 무역시장 현황 | 88 |
| 1) 콜롬비아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 86 |
| 2) 콜롬비아 현지시장 현황 | 89 |
| 3) 콜롬비아 온라인시장 현황 | 90 |
| 2. 중남미지역 투자진출 방안 | 92 |
| 1) 중남미 개발은행(CAF)을 활용한 투자진출 | 92 |
| 2) 콜롬비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검토의견 | 96 |
| 3. 중남미국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대응방향 | 99 |
| | |
| | |
| | |
| □ 참고문헌 ···································· | .03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콜롬비아

2. 훈련기관명 :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3. 훈련분야 : FTA

4. 훈련주제 : 중남미국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한-콜 FTA 활용방안」**연구

5. 훈련기간 : 2017. 11. 20 ~ 2018. 5. 6

(파견기간 : 2017. 11. 13 ~ 2018. 5. 11)

훈련기관 개요

1. 기관개요

ㅇ 훈련국 : 콜롬비아

o 훈련 기관명 :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o 인터넷 웹주소 : http://unal.edu.co

ㅇ 주소 : Carrera 45 #26-85 Edif. Uriel Gutiérrez Bogotá-Colombia

o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본 캠퍼스는 수도 Bogotá시에 위치하며 아마존, 카리브해, 마니살레스 등 총 8개 캠퍼스가 있음

2. 기관소개

□ 연혁 및 개관

- o 콜롬비아 독립(1811) 이후, 1867년 콜롬비아 국가연합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의 부 통령으로부터 산탄데르 행정이 콜롬비아의 공립대학교로써 법적-제도적 표현의 일환으로 처음 설립한 공화국 중앙대학임
- o 2학부 94종, 준석사 97종, 치·의학 38종, 석박사 200여종으로

콜롬비아에서 가장 많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기관으로, 2,916 명의 교수진이 있음

0 학부 현황

- Artes(예술학부)
- Ciencias(과학부)
- Ciencias Agrarias(농업과학부)
- Ciencias Económicas(경제학부부)
- Ciencias Humanas(인류과학부)
- Derecho,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법학,정치 및 사회학부)
- Enfermería(간호학부)
- Ingeniería(엔지니어링학부)
- Medicina(의학부)
- Medicina Veterinaria y Zootecnia(수의학부)
- Odontología(치의학부)

ㅇ 주요 조직 :

- Secretaría de Sede(본부사무국)
 - Gladys Aminta Mendoza Barón(gamendozab@unal.edu.co)
- Dirección Académica(학업 담당부)
 - · Carlos Eduardo Cubillos Peña(diracasede_bog@unal.edu.co)
- Dirección de Investigación y Extensión(연구 및 확장 관리부)
 - · Jairo Alexis Rodríguez López(dieb_bog@unal.edu.co)
- Dirección de Laboratorios(실험실 관리부)
 - · Alvaro Acero Rozo(aaceroro@unal.edu.co)
- Dirección de Bienestar Universitario(대학복지부)
 - · Oficina de Comunicaciones(Correo: Info_drbiebog@unal.edu.co)
- Dirección de Patrimonio Cultural(문화유산관리부)
 - · Juan Manuel Tejeiro Sarmiento(dircultura@unal.edu.co)

- Dirección de Personal(인사 관리국)
 - · Alba Lucía Marín Zuluaga(talenhumano_bog@unal.edu.co)
- Dirección de Financiera y Adeministrativa(재무관리부)
 - · Luz Amparo Florez Garzon(dirfinadmin_bog@unal.edu.co)
- Dirección de Ordenamiento y Desarrollo Fisico(물리적 배치 및 개발부)
 - · Héctor Mario Ramirez Taborda(hmramirezt@unal.edu.co)

ㅇ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사진







ㅇ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강의실







Ⅰ. 서론

1. 훈련목적

- 1) '16.7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글로벌시장 동반진출 기회 가능성 예상과 국 내 수출입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2)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 및 페루에 이어 3번째 FTA 체 결국가로서 떠오르는 신성장동력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¹⁾을 기반으로한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함

2. 훈련과제의 필요성

- 1)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및 수출 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시장으로의 투자진출은 어려운 대외수출 여건속에서 새로운 수출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최근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 투자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시행('14),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16) 등을 구축하였고 Yes FTA 컨설팅 사업('15)²⁾ 등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해 성장동력 발굴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3)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¹⁾ 태평양동맹(Pacific Aliance): 중남미 자유무역대표 4개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미공동체(MERCOSUR)에 대응하여 결성한 연합('12.6, 발효'15.7)

²⁾ Yes FTA 컨설팅 유형 : FTA 활용 종합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시스템활용 컨설팅

위한 수출입 업체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공동화 컨설팅사업 및 특송물품의 적하목록 제출방식, 화물 집중관리 와 일반화물 외 환적물품 반출입, 우편물품의 EMS 발송 등을 혼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시스템을 적용한 특송물품 EMS 환적제도 등을 시행해 시·공간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위 치한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 있어 통관장벽을 해소하 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4) 본 훈련과제의 훈련대상국인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 법률 'Ley 9 de 1991' 3)등을 시행,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 및 손 실보호를 위한 '투자가 법률 및 제도의 안정계약(Legal Stability Contracts) 제도' 및 자유무역지대(Zona Flanca)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하기에 우호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교역시장 내 진출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
- 5) 따라서, '16.7 한국-콜롬비아 FTA 공식 발효 이후 미국, 중국, 아시아 시장 등에 국한된 어려운 대외무역상황 속에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효과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훈련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관세청의 통관시스템 발판 마련과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연구가시급함
- 3. 훈련국 및 훈련기관 선정의 적합성
 - 1) 콜롬비아 국가 정보

가. 콜롬비아 국가 정보(일반현황)

ㅇ 국가명 : Republic of Colombia(콜롬비아 공화국)

³⁾ 외국인 투자 법 'Ley 9 de 1991 :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자국기업과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투자를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의 자동승인 정책을 규정한 법률

o 면 적 : 약 1,141,748km (남한의 약12배)

 인접국: 파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와 접 경하고 있음. 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 해와 접해있음. 서부 안데스산맥, 동부 아마존 저 지대 평워

○ 인 구 - 약 4,769만명('17 기준)(수도 보고타 인구 약 800만명)

o 수 도 - Bogotá(보고타)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4년), 대통령 Juan Manuel Santos Calderón
 ('18.5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음)

○ 인 종 : 메스티소(58%), 백인(20%), 뮬라토(14%), 아프리카 흑인계(4%), 인디안 흑인계(3%), 인디안(1%)

0 언 어: 스페인어, 200여 토착언어

ㅇ 종 교 : 카톨릭(95%), 기타(5%)

ㅇ 기 후 : 열대지역으로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함

 이 기 타 : 중남미국가 중에 한국전쟁에 유일한 참전국으로 한국과는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ㅇ 콜롬비아의 연도별 한국 관광객 방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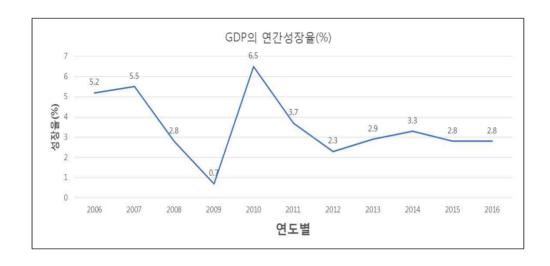
| 연도 | 전 세계(명) | 한국(명) | 비중(%) |
|------|-----------|-------|-------|
| 2015 | 2,228,342 | 8,156 | 0.36 |
| 2016 | 2,593,057 | 7,578 | 0.29 |
| 2017 | 3,233,162 | 8,236 | 0.25 |

* 출처 : 콜롬비아 상공부(Min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Oficina de Estudios Económicos

나. 콜롬비아 국가 정보(경제현황)

o GDP('16기준) : 2,741억달러

1인당 GDP('16기준): 5,623달러



ㅇ 한국과 콜롬비아의 국가 경쟁 순위표

| 지표 | 한국(순위) | 콜롬비아(순위) | 전체국가수 |
|--|--------|----------|-------|
| 세계글로벌 경쟁지수 (Índice Global de Competitividad)(2017-2018) | 26 | 66 | 137 |
| 두잉비즈니스 (Doing Business)(2018) | 4 | 59 | 190 |
| 여행·관광 경쟁력지수 (Índice de Competitividad en Viajes y Turismo)(2017) | 19 | 62 | 136 |
| 무역용이 지수 (Índice de Facilitación de Comercio-FEM)(2017) | 27 | 85 | 136 |
| 세계경쟁(Competitividad Mundial-IMD)(2017) | 29 | 54 | 63 |

o 화폐단위 : 콜롬비아 페소(1USD = 2,839.8페소, '18 기준)

주요산업: 석탄생산량 남미 1위, 석유생산량 남미 4위, 총수출 중 원유가 약 40%, 연료탄이 약13%를 차지함. 내륙지역 유연탄, 석유개발 등을 위해 철

도, 송유관 등의 인프라 확충 추진 중 주요산업으로는 농업(약 20%), 제조업(약20%), 서비스 업(약60%)

- 주요수출품 : 석탄, 석유, 커피, 농산물, 금, 에메랄드(세계 생산 1위), 화훼 작물(미국 화훼작물 수입의 약 70% 차지)
- ㅇ 한국-콜롬비아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주요품목 |
|-------------|-------|-------|-------|-------|---------------------|
| <u></u> 수 출 | 1,342 | 1,509 | 1,129 | 853 |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등 |
| 수 입 | 207 | 608 | 323 | 433 | 석탄,커피 등 |
| 교역규모 | 1,549 | 2,117 | 1,452 | 1,286 | |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협회



o 2015년 이후로 對콜롬비아 수출은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 차, 자동차 부품 등의 부진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원유 및 철강 등의 수입 감소로 교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 나, '15 기준 한국은 콜롬비아의 수입 9위 국가로서 꾸 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한-콜롬비아 FTA발효에 따른 영향과 수출확대 방안)

ㅇ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주요 수출입품목(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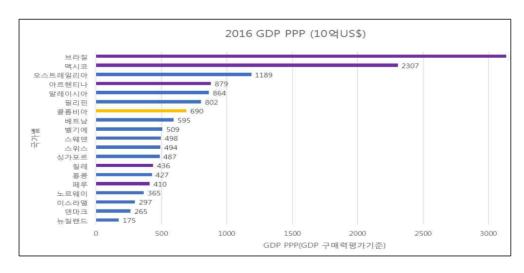
| 수출(콜롬비아 ⇒ 한국) | 백만달러 | 비중(%) |
|------------------------------|----------|-------|
| 석탄(Carbón) | 229,935 | 50.3 |
| 커피(Café) | 89,867 | 19.7 |
| 금속(Metalurgia) | 83,209 | 18.2 |
| 페로니켈(Ferroníquel) | 26,086 | 5.7 |
| 기초화학(Química Básica) | 9,531 | 2.1 |
| 기타(Resto) | 18,411 | 4.0 |
| 합계(FOB 기준) | 457,039 | 100.0 |
| 수입(한국 ⇒ 콜롬비아) | 백만달러 | 비중(%) |
| 기 크 됭 칭(Ou/mice D(sice) | 233,658 | 29.5 |
| 기초화학(Química Básica) | 208,317 | 26.3 |
| 자동차(Automotor) | 195,979 | 24.8 |
| 기계 및 장비(Maquinaria y Equipo) | 75,380 | 9.5 |
| 직물(Textiles) 기타(Resto) | 22,085 | 2.8 |
| / \(\(\(\testil\)\) | 56,099 | 7.1 |
| 합계(CIF 기준) | 791,519 | 100.0 |
| 수입(FOB 기준) | 746,219 | |
| 무역수지(FOB 기준) | -289,181 | |

^{*} 출처 : 콜롬비아 상공부(Min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Oficina de Estudios Económicos

2) 훈련국 선정배경

가.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 한국전쟁에 유일한 참전 국가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최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4) 보고서에서 대 외무역에 있어 우호한 투자환경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그 동안 마약 및 게릴라 등 열악한 치안상황으로 세계 경제개방이 늦어져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아직까지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시급하게 여겨 마약전쟁을 통해 세계화 전략을 위해 치안안 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 및 다양한 외국인 투자정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나. 콜롬비아는 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국 회원국으로 풍부 한 자원과 경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산업인프라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인구 3위(4,769만명, '17 기준), 경제 규모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위로서 Big 3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는 콜롬비아를 투자적격으로 격상함('11). 또한 무역대상국의 다각화를 위해 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로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함('16.7 한국-콜롬비아 FTA 공식 발효)



⁴⁾ 기업환경평가(Doing Buisiness) 보고서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각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한 보고서로, 2017년 기준 콜롬비아는 2006년 전세계 87위에서 53위로 상향조정됨. 이는 라틴아메리카지역내 가장 큰 성장률을 차지한 것을 발표됨

- * 콜롬비아는 2016년 GDP PPP(구매력평가) 기준 690십억달러로 세계 31위, 중남미국가 내 4위를 차지함(Procolombia/Ambiente de inversión y oportunidades de Negocio en Colombia)
 - 라.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의 기업들이 중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 페루에 이어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교역 확대 효과는 중남미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훈련과제의 훈련국으로 선정함

3) 훈련기관 선정배경

- 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는 QS 세계 대학평가 결과 콜롬비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됨
- 나. 최근 국내기업인 한국전력이 콜롬비아 국립대에 '디지털변전소 엔지니어링툴'의 기술 이전하고('16), 국내 중소기업스카이시스템은 기존의 게시판 대체를 위한 디지털게시판, 각종 증명서 발급용 키오스크, 실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그리고 주요 강의실에 전자칠판 공급 등의 MOU체결('12) 등 콜롬비아 국립대는 한국의 선진 기술시스템을 이용하여 콜롬비아내 디지털대학 프로젝트 선두에 나서고 있음
- 다. 한국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카리브해 지방캠퍼스)에서 2017 년 K-STAR(친한외국인 기반구축 행사) 홍보 및 매력한국알 리기 지방도시대학교 순회 문화카라반을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양국의 우 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 라. 특히, 한국정부가 2014년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화학세미 나'에서 「FTA와 화학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 콜

롬비아 국립대학교 학생, 졸업생 및 교수 등이 다수 참석하여 '한-콜 FTA가 콜롬비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국간의 상호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본 훈련과제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훈련기관임

마. 또한 훈련기관이 위치한 수도 보고타(Bogotá)시는 인구 800 만의 20대 ~ 40대의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폭넓은 시장 잠재력과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중남미 7대 투자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콜롬비아의 로사리오 대학과 칠레의 기업 및 도시경쟁력 평가기관 Business Intelligence의 공동연구) 콜롬비아 정부기관 및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 보고타 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Bancoldex), 콜롬비아 컨벤션센터(Corferias-Centro de Convenciones) 등 각종 무역관련 유관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현지 무역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이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4. 훈련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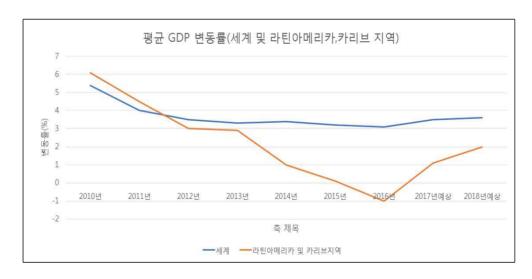
- 1)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지도교수 지도하에 콜롬비아 경 제 및 무역 금융구조 분석 및 콜롬비아 정부 외국인 투자정책 등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 및 훈련일정 논의
- 2) 한-콜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 및 비즈니스모델 방안 연구
 - 최근 공식 발효된 한-콜 FTA 전문 분석 및 태평양동맹(PA)
 회원국 간 특혜제도와 관련 조항에 대한 문헌연구 및 자료 조사를 통해 중남미 지역공동체 회원국 간 특혜제도를 활용 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투자 진출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방안 연구
- 3) 시ㆍ공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유통구조 단축

및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관시스템 연구

- 한국의 우수한 전자통관시스템과 세계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 공항의 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에 적합한 방식의 물류시스템 구축 및 수출유망 품목 연구를 위한 현지 시장 조사
- 4) 보고타 상공회의소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산업 연구를 위한 현지 투자시장 분석
- 5) 현지 진출 기업 및 상공인 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통관애로 컨설팅 및 한-콜 FT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對 중 남미 수출입 진출확대를 위한 관세청 지원방안 검토
- 6) 현지 무역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무역거래선 발굴, 현지 진출 프로젝트 등 연구 분석

Ⅱ. 본론

- 1. 콜롬비아의 최근 경제현황
 - 1) 콜롬비아 및 라틴아메리카지역 경제현황
 - 2017년 IMF('17.4)는 세계 성장률 3.5%를 전망하고 2016년 성장률(3.1%)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에는 미국에서 주요 경제 동력으로 등록되었다. 중국은 2016년 성장수준을 유지함에 비해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유로존에서도 GDP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2016년 마이너스 변동률(-1%)을 기록한 후 2017년 약간의 성장률(1.1%)을 예상하였다.
 - 2012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세계 경제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국제 원자재 가
 격이 하락함에 영향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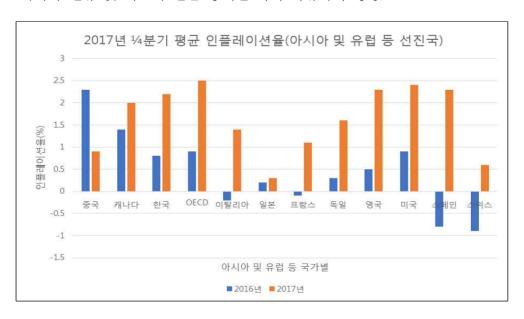
 2016년 말에는 부정적 변동을 가진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 도르,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경제 하락이 있었다.
 2017년에는 약간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낮은 성 장률이 유지될 것임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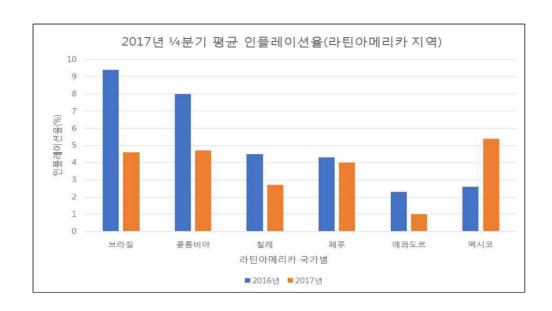
Variación del PIB anual de países latinoamericanos(라틴아메리카지역 평균 CDP 변동률

| | | 2017 전망 | | | | 2018 전명 | 방 |
|-----------|-------|---------|------|-----------|------|---------|--------------|
| | 2016 | IMF | 세계은행 | 라틴아메리카 합의 | IMF | 세계은행 | 라틴아메리카 합의 |
| Argentina | -2.3 | 2.2 | 2.7 | 3.0 | 2.3 | 3.2 | 3.1 |
| Brasil | -3.6 | 0.2 | 0.5 | 0.5 | 1.7 | 1.8 | 2.4 |
| Chile | 1.6 | 1.7 | 2.0 | 1.8 | 2.3 | 2.3 | 2.6 |
| Colombia | 2.0 | 2.3 | 2.5 | 2.4 | 3.0 | 3.0 | 3.1 |
| Ecuador | -2.2 | -1.6 | -2.9 | 0.6 | -0.3 | -0.6 | 0.9 |
| México | 2.3 | 1.7 | 1.8 | 1.4 | 2.0 | 2.5 | 2.1 |
| Perú | 3.9 | 3.5 | 4.2 | 3.6 | 3.7 | 3.8 | 3.8 |
| Venezuela | -18.0 | -7.4 | -4.3 | -3.8 | -4.1 | 0.5 | -0.1 |

^{*} IMF '17.4월 전망. 세계은행 '17.1월 전망. 라틴아메리카 합의 '17.3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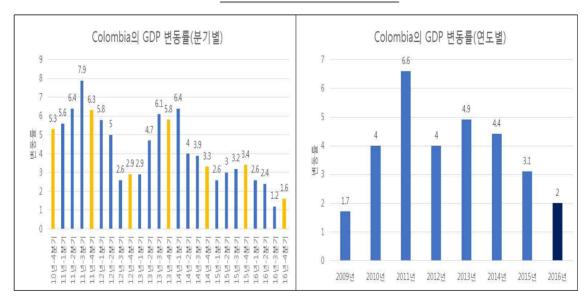
2017년 1/4분기 선진국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수준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다.(환율하락과 원유 및 가스와 같은 통제된 가격 자유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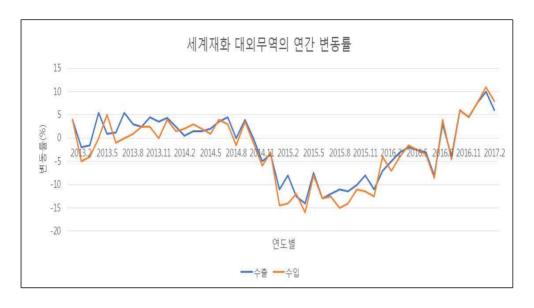
콜롬비아의 2016년 4/4분기 GDP 변동률은 1.6%였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2016년에는 2015년의 GDP보다 1.1% 하락된GDP가 2% 성장률을 보여준다. 2009년(1.7%) 이후로는 아주낮은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Colombia GDP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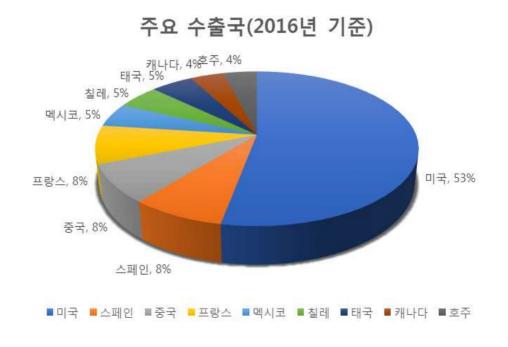


- 2) 콜롬비아의 대외무역 현황
 - ㅇ 2014년 말부터 세계 재화 무역의 흐름에는 부정적 변동이 있

었다. 2016년에는 성장의 경향이 보이고 2017년에는 성장이 강화됨을 보여준다.



ㅇ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국가 현황



3)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100만 US\$)

| | 2015 | 2016 |
|---|--------|--------|
| Cuenta Financiera(금융 계좌) | 18,293 | 12,764 |
| Ingresos de capital(자본 소득) | 24,903 | 24,108 |
|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외국인 직접투자) | 11,732 | 13,593 |
| Inversión de cartera(포트폴리오 투자 ⁵⁾) | 9,808 | 8,907 |
| Préstamos(차입) | 3,363 | 1,609 |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 소득의 56.4%를 차지했고 반면에 포 트폴리오 투자는 36.9%, 차입은 6.7% 차지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⁵⁾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 : 국제투자에는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로 나뉘는데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직접투자, 단순히 투자수익을 위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투자라 한다.

콜롬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

| | | | 단위 | : 100백만US\$ |
|---------------|--------|--------|--------|---------------|
| 분 야 | 2015 | 2016 | 변동률(%) | 변동률에 대한 기여 |
| Petrolero(석유) | 2511.9 | 2171.6 | -13.5 | -2.9 |
| 교통,창고,통신 | 801.5 | 1096.4 | 36.8 | 2.5 |
| 광업 및 채석 | 533.4 | -104.0 | -119.5 | -5.4 |
| 제조 | 2471.0 | 1913.8 | -22.5 | -4.7 |
| 금융및기업서비스 | 2103.1 | 2572.1 | 22.3 | 4.0 |
| 전기,가스,수도 | 274.3 | 3629.6 | 1223.2 | 28.6 |
| 농업,임업,어업 | 211.3 | 251.2 | 18.9 | 0.3 |
| 공동체 서비스 | 232.5 | 340.6 | 46.5 | 0.9 |
| 건설 | 746.1 | 676.9 | -9.3 | -0.6 |
| 상업,식당,호텔 | 1847.1 | 1044.4 | -43.5 | -6.8 |
| 합계 | 11,732 | 13,593 | 15.9 | 15.9 |

- 2015년과 2016년 사이 콜롬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기, 가스,수도 분야에서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금융 및 기업서비스 분야에서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제조업이나 상업, 식당 및 호텔분야에서는 감소함을 보여준다.
- 이는 주로 콜롬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전에는 석유 산업분야에서 크게 차지하였으나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고, 금융 및 비즈니스, 전력,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교통 및 통신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토요타, 혼다, 마쓰다 등 자동차부문이 중남미시장으로 한국보다 20년가량 앞서 진출하였고 중국 또한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에 이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관심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리포트 - 전비호〈주멕시코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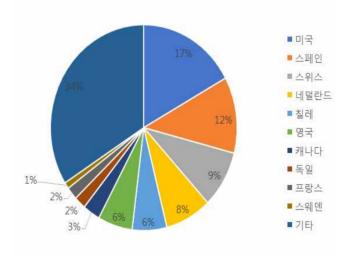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간 직접투자 현황

| | 한국의 對콜롬비아 투자율 | 콜롬비아의 對한국 투자율 |
|----------|---------------|---------------|
| | 2006~2017 | 2006~2017 |
| 투자증가율(%) | 209.9 | -1.6 |
| 참여율(%) | 0.1 | 0.0 |

*출처 : Min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콜롬비아 중앙은행 인 Banco de la República 발표자료 에 의하면 2000년부 터 2016년까지 콜롬 비아의 가장 큰 직 접투자 국가는 21.1%(31,673백만달 러)로 미국이었으며 영국 12.2% (18,368 백만달러), 스페인 8.8%(13,368백만달

2015년기준 콜롬비아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현황



러), 스위스 6.1% (9,095백만달러) 순으로 미국 및 유럽국가의 직접투자가 크게 차지하며, 2016년에는 캐나다가 ISAGEN(콜롬비아 전력회사)을 2,000백만달러에 구입한 계기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칠레, 브라질 등 역내 국가의 투자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Procolombia - Los países con mayor inversión extranjera en Colombia

※ 출처: 콜롬비아 상공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발표자료 Banco de la República. Cálculos OEE - MINCIT

4)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

- (1)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결과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06년 181개 국가 중 83위에서 '09년 37위로 상향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활발히 전개해온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대외무역에 있어 우호적 환경이라고 할수 있다.
- (2)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자유무역지역 (Zona Franca)을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에게는 소득세율 20%, 관세 등 세제혜택, 세관영역에서 취득한 원자재, 투입재 및 완제품의 부가세 면제, 물류의 운송 및 보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국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의 산업활동,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이 있다.

보고타 Fontibon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





- o Zonas Especiales Económicas de Exportación(ZEEE):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특별경제수출지역으로 콜롬비아 Cúcuta Buenaventura, Valledupar, Ipiales, Tumaco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3) 그 밖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 득세 면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새로운 산림 경작의 이용
 - VIS⁶⁾와 VIP와 관련된 수입 : 프로젝트 개발, 주택의 첫 양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부동산 매각
 - 풍력, 바이오매스 또는 농업, 태양열, 지열 또는 해양폐기물을 기반으로 생선된 전력판매
 - 선박 및 초안 슬래브를 가진 하천 운송서비스
 -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기부에 대한 소득세 혜택
- (4) 콜롬비아는 다음과 같은 자국내 외국인 투자의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 ① 정치헌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OECD의 제한 지수에 따라 콜롬비아가 OECD국가 및 비OECD국가에 적용하는 평균이하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콜롬비아 국내투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② 콜롬비아의 투자의 국제협정네트워크는 외국인 투자에 대

⁶⁾ VIS와 VIP 정책: Las Viviendas de Interés Social/Las Viviendas de Interés Priotario - Juan Manuel Santos 정부의 공공 주택 정책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택에 대한 보장과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정책임. VIS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낮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고 VIP는 가장 극심한 가난에 처한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VIS에 비하여 VIP가 우선 시급한 원조가 필요함

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보장하며, 국제투자의 보호 및 존중에 대한 국가 및 모든 기관의 약속을 보여준다.

- ③ 국방 및 국가 안보활동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독성, 위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과 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 제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있어 방송서비스 산업의 총 공유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다; 언론 및 방송, 어업, 주류 및 게임분야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
- ④ 콜롬비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모든 국가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FDI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계목적일지라도 중앙은행(Banco de Repúblic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자유로운 통화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 재화의 수출입, 외채, 보증 및 파생상품 운영 등에 있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Bonco de República에 등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 ⑤ 콜롬비아는 모든 유형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현재 64개의 자유무역 협정 및 기타 상업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 다.
- (5) 콜롬비아는 이중방지과세협정(ADT : Los Acuerdos para evitar la Doble Tributación Internacional)을 통해 외국인투 자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DT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나타낸다.
 - ① 양국간의 거주자의 운영에 대한 최소 조건으로서의 세금의 안정성

- ② 경감된 공제율을 통해 통합 실효 세 부담의 경감
- ③ 특정 소득세의 면제, 일반적으로 ADT는 소득세 또는 경우에 따라 재산세에 국한된다. IVA와 같은 직접세는 ADT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업 및 상업세(ICA)와 같은 토지세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반환에 대한 기대 및위험, 세금에 대한 영향에 있어 투자국가를 선택할 때ADT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가들은 거주, 소득원 또는 제한과 같은 용어 정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주요 문제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를 찾는다. 해외에서 발생된소득을 위해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은 거주 국가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거주 국가에서 면세 수입으로 간주된다. 동일한 과세 기간이나 동일한 원인의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국가들간에 형평성을 위한 공통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 하기 위해 국제협약인 ADT를 통해 세계화 추세를 따르고 있다.

④ 콜롬비아와 이중방지 협정 발효국가

| 국가 | 상태 | 협정 |
|--------------------------|----------|----------------|
| 안데스공동체(페루,에 콰도르,볼리비아) | 받효 | CAN위원회의 결정 578 |
| 스페인 | 2008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칠레 | 2008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스위스 | 2012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캐나다 | 2012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멕시코 | 2013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한국 | 2014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포르투칼 | 2015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인도 | 2014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 체코 | 2015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프랑스 | 2015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영국 | 2016년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

- 이밖에 벨기에, 미국, 파나마,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는 이 중과세방지 협정 진행중인 상태에 있으며,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파나마, 터키, 베넬수엘라와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 및 항공항법으로 발생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정을 진행중이다.

(6) 자본 등록 및 외국인투자 등록

-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법은 무역회사 설립 및 지사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수행될 활동과 관련하여 주주, 출자자 또는 본사의 재량에 따라 자본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법의 규정 에 따라 자본 등록 시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 지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설립시에 자본금이 전액 지불 되어야 한다.
- 공개 유한회사는 청산 결제를 위해 최소한 공인 자본의 50%는 출자되어야 하고 최대 1년의 기간은 각 주당 가치 의 1/3은 지불되어야 한다.
- o 단순 활동을 위한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 시 자본 출자가 요 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대 2년 내에 가입된 자본 전체가

출자되어야 한다.

o 최대 1년 기간의 거주자가 당국에 등록한 외국환은 회사 또는 할당된 지사의 자본의 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중앙은 행에 외국인투자로 등록되어야만 한다. 이는 콜롬비아의 공식 승인 외환중개기관인 IMC(intermediario del mercado cambiario)를 통해 진행되며 변경 작업 등록을 위해 최소정 보를 제출한다.

ㅇ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체(변경) 및 취소

- 외국인 투자의 대체(외국인 투자가가 투자가를 변경하거나 투자국 또는 투자를 받는 회사를 변경)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국제교류 부서에 등록해야하며, 양식 11의 '국제 투자 등록신고서'와 양식 12의 '취소 등록신고서'를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내제출해야한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소를 위해서는 투자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국제교류 부서에 통보해야하며, 양식 12의 '국제 투자 취소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직접투자의 취소가 사업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양식 11A의 '사업 재편성을 위한 국제투자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직접투자 취소요청서 제출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소 사유로는 투자회사의 청산, 자본 감소 및 변경, 주식 또는 사회 권리의 재취득, 국내투자가 로서의 자격, 외국인 투자가의 청산 또는 사망, 자본 참여 가 없는 행위 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신타회 사와 함께 진행되는 신탁업 종결, 사적 자본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청산, 거주자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 사업재 편성(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이 있다.

5) 콜롬비아의 금융시스템 구조

- (1)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의 개요
 - o 콜롬비아의 금융시스템은 크게 신용기관(EC, los establecimientos de crédito), 금융서비스기관(SSF, las Sociedades de servicios financieros) 및 기타 금융기관(otras entidades financieras)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 신용평가에 있어 콜롬비아 정부 및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intendency of Colombia)의 규제로서 수익성, 위험 및 지급능력 지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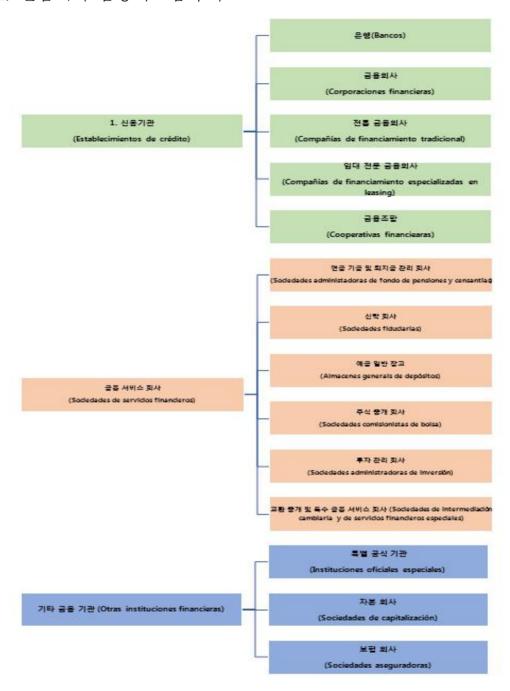
ㅇ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의 지표

| 구 분 | 기관 수 | | | 자산/국내총생산(GDP) (%) | | |
|----------|----------------|----------------|-------|-------------------|----------------|-------|
| | ' 98.12 | ' 08.12 | 12.12 | ' 98.12 | ' 08.12 | 12.12 |
| 신용기관(EC) | | | | | | |
| 은행 | 38 | 18 | 23 | 44.5 | 38.8 | 50.8 |
| 금융회사 | 16 | 3 | 5 | 6.4 | 0.8 | 1.7 |
| 전통 금융회사 | 27 | 17 | 16 | 2.0 | 1.9 | 1.0 |
| 임대전문금융회사 | 23 | 10 | 5 | 1.6 | 2.9 | 2.2 |
| 금융조합 | 1 | 8 | 7 | 2.0 | 0.6 | 0.4 |
| EC 합계 | 105 | 56 | 56 | 56.6 | 45.0 | 56.1 |

- '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각종 신용평가를 통해 다수의 신용기관의 청산 및 합병으로써 신용기관은 그 수가 105개 에서 56개로 줄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은 56.1% 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였다.

* 출처 : Revista del Banco de República

(2)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의 구조



(3) 콜롬비아 금융기관의 분류

o 중앙은행(Banco central) : 콜롬비아의 중앙은행은 el banco de la República로 통화의 권한, 교환 및 신용, 정부의 재정 대리인, 국가 채무부서의 최근 지표 및 관리, 행정부와 협력

하여 개발하는 활동 등을 담당한다. 주요 기능은 통화, 외환 및 신용정책의 규제기관이고 행정, 총 자산, 기술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국유 기업이다.

기타 예금 조합 : 금융 중개 및 광범위한 의미의 국가 화폐
 에 포함 된 부채 발행을 다루는 모든 금융회사 및 준기업
 (중앙은행 제외)이 포함된다.

콜롬비아의 금융감독원(la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감독의 대상인 기관으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에게 신용의 형태로 제공하는 자원은 공공예금의 산물이며 공공예산에서 기인하지 않고 중개활동을 수행한다.

- o 상업은행(Bancos comerciales) : 대부 은행으로써, 그 운영범위 는 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진다.
- o 신용 협동조합 및 금융 조합(Cooperativas de crédito y cooperativas financieras): 회원 또는 비회원간의 상업적 관계 유지 여부 와 상관없이 회원이 소유하고 통제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예금 소액 금융기관(Instituciones microfinancieras captadoras de depósito): 주로 집단 대출 제공과 같은 전문화된 방법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요 모델의 기관이 포함된다.
- 기타 예탁 기관(Otras instituciones de depósito): 중앙은행, 상업은행, 신용조합 및 금융협동조합, 소액 예금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금융 중개 기관으로 예탁 또는 광범위한 화폐의 국가 정의에 포함 된 부채 발행 기관이다. 예를 들어, 저축

대부 조합, 모기지 회사, 농촌 은행, 농업 은행, 우편환 및 우편 저축 은행 등이 있다.

○ 기타 금융 중개기관(Otros intermediarios financieros, OIF): 모든 보험회사와 연기금,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회사를 제외한 OIF는 예금이나 금융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기관의 유형 중에는 금융회사, 임대 회사, 투자 펀드, 투자 은행, 특수 목적 기업과 증권 보험 업자 및 딜러 등이다.

* 출처 : Comisión Intersectorial de estadísticas de Finanzas Públicas - Clasificación de entidades del sector público colombiano para la elaboración de Estadísticas de Finanzas Públicas

2. 콜롬비아 통관제도

- 1)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 (1) 콜롬비아의 수출입통관 총괄은 상공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에서 담당하나, 세무 및 세관업무(관세의 징수 및 관리)는 세무관세청(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담당한다.
 - (2)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현황
 - 가) 설립 : 1992년 세무국(DIN)이 통관국(DAN)을 합병하여 1993년 세무관세청으로 설립됨
 - 나) 대표 : 사무총장(Dirección General) Santiago Rojas Arroyo
 - 다) 지역세관 : 세무관세청은 보고타(Bogota) 수도에 위치하며,

각 관할구역별로 세무 및 세관업무를 담당한다. 아라우카 (Arauca), 아르메니아(Armenia), 부카라망가(Bucaramanga) 등 42개의 지역세관이 있음

라) 담당업무 : 징수, 환급, 통제,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외화자금 관리, 세관의 관리 및 운영 등 세관업무를 총괄함





- · 콜롬비아에는 수입물품의 적하를 위한 71개의 항구, 18개의 공항, 13개의 육로통관지가 있다.
- 바) 조직 : 사무총장(Diección General)을 중심으로 인사행정총 국(Dirección de Gestión de Recursos y Administaración Económica) 등 7개의 국으로 구성되어있고, 내부통제부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Control Disciplinario Interno) 등 22개의 하위부서로 구성되어있음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조직표

| Dirección General(사무총장) |
|---|
| Dirección de Gestión de Recursos y Administración Económic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Control Disciplinario Interno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Personal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cursos Físicos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cursos Financieros |
| Subdirección de Gestión Comercial |
| Dirección de Gestión Organizacional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Procesos y Competencias Laborales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Análisis Operacional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Tecnología de Información y Telecomunicaciones |
| Dirección de Gestión Jurídic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Normativa y Doctrin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presentación Extern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cursos Jurídicos |
| Dirección de Gestión de Ingresos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caudo y Cobranzas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Asistencia al Cliente |
| Dirección de Gestión de Aduanas(관세국)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Comercio Exterior(대외무역부) |
| Subdirección de Gestión Técnica Aduanera(세관기술부)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Registro Aduanero(세관등록부) |
| Dirección de Gestión de Fiscalización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Fiscalización Tributari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Fiscalización Internacional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Fiscalización Aduaner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Control Cambiario |
| Dirección de Gestión de Policía Fiscal y Aduanera |
| Subdirección de Gestión Operativa Policial |
| Subdirección de Gestión de Apoyo(지원관리부) |
| |

※ 출처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www.dian.gov.co)

(3) 콜롬비아의 조세 제도

내국세(IMPUESTOS NACIONALES)

| 개 념 | 일반사항 |
|---|---|
| 소득세 (Impuesto sobrela renta) | 일반 세율 2017년 : 34% 2018년 이후 : 3 3 % 자유무역지역(Zona franca) 사용자 : 20% |
| 배당 세금 (Tributación de dividendos) | 회사 및 고정사업장의 수준에서 과세되었던 수익에 과세된다. 2017년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분배된 배당금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기업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5%의세금이 부과됨. 거주자에게 분배된 배당금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USD의 범위 한계세율7) 0 - 6,372 0% 6,372 - 10,560 5% 10,560 초과 0% 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에는 과세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부과되고 기관에는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서 35%의 세금을 뺀 금액의 5% 이상이다. |
| 소득에 대한 할증세 (Sobretasa al impuesto sobre la renta) | 2017.1.1.부터 800,000COP(266,667USD) 이상 소득의 기업은 2017년 6%, 2018년 4%의 할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9년 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 임시 수입(Ganancias ocasionales) | 고정자산, 상속 및 복권의 처분 등으로 얻은 수익과 같이 특정소득에 대해 부 과하는 세금 세율: 10% |
| 금융거래과세(GMF) (Gravamen a los Movimientos Financeros) | 금융거래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 |

| | 판매에 대한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행 | | |
|--------------------------------|--|--|--|
| | 위에 대해 부과된다. | | |
| | - 명시적으로 제외된 부동산을 제외하 | | |
| | 고는 부동산의 매매 | | |
| | -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무형자산 | | |
| | 에 대한 권리의 팬매 또는 양도 | | |
| | - 명시적으로 제외된 서비스를 제외하 | | |
| | 고는 국가 영토 또는 해외에서 서비 | | |
| 부가가치세(IVA) | 스를 제공하는 것 | | |
| (Impuesto al Valor Agregado) | -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유형자산 | | |
| | 의 수입 | | |
| | - 복권 등의 게임의 유통, 판매 또는 | | |
| | 운영 | | |
| | (인터넷을 통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 | |
| | 복권, 게임 등 제외) | | |
| | · 일반세율 : 19% | | |
| | · 특별세율 : 0 - 5% | | |
| | 소비세는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모바 | | |
| | 일 네비게이션의 제공, 데이터 서비스. | | |
| | 차량 판매 및 운송, 레스토랑, 카페테리 | | |
| 소비세(Impuesto al consumo) | 아,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가게, 과일가 | | |
| - | 게,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 및 | | |
| | 음료에 대해 부과된다. | | |
| | 세율 : 4, 8, 16% | | |
| | 연소를 위해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 | |
| | 화석연료(석유의 모든 형태 및 화석연 | | |
| | 료의 모든 형태 포함)의 자가소비 또는 | | |
| | 판매를 위한 수입을 위해 판매, 체취, | | |
| | 수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
| | 연료의 부피 또는 중량에 따라 에너지 | | |
| 탄소에 대한 국가세 | 단위(Terajoules) 당 단위부피(CO2의 | | |
| (Impuesto nacional al carbono) | kg)로 표시되는 각 결정된 연료에 대해 | | |
| |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계수에 따라 | | |
| | 결정된다. | | |
| | | | |
| | 화석연료 단위 세율(페소) 천연가스 ㎡ 29 | | |
| | | | |
| | 액화석유가스 갤런 95 | | |

| | 가솔린 | 갤런 | 135 |
|---------------------------|----------------------|----------|---------|
| | 등유 및 제트연료 | 갤런 | 148 |
| | ACPM | 갤런 | 152 |
| | 연료유 | 갤런 | 177 |
| | | | |
| | 각 시(도)의 관할· | 구역에서 | 행하여지는 |
| | 산업활동, 서비스 | 및 상업의 | 기 개발에 대 |
| 산업 및 상업세(ICA) | 해 과세된다. 회사 소득에 대해 적용 | | |
| (Impuesto de industria | 는 세율은 운영하는 지자체에 따라 1 | | |
| y comercio) | 르고 그 범위는 산업활동에 대해서 | | |
| • | 0.2~0.7%, 상업 및 서비 | | |
| | 서는 0.2~1.0% 세월 | | |
| | 기는 0.2 1.070 제달 | <u> </u> | 2-7, |
| 케싱케/Immysets musdial) | 재산이 위치한 지기 | 사체에 따 | 라 재산가치 |
| 재산세(Impuesto predial) | 의 0.5~1.6%가 부과된다. | | |
| | | | |
| | | | |
| 등록세(Impuesto de registro) | 활동에 따라 0.1~19 | % 부과된 | 다. |
| | | | |

세외 수입(Pagos Exterior)

| 개념 | 일반사항 |
|---|--|
| 유동소득에 대해 추정되는 소득의 초과분에 대한 보상(Compensaci n de los excesos de renta presuntiva sobre la renta líquida) | 다음 5년 내에 보상된다. |
| 세금 손실보상(Compensación de pérdidas fiscales) | 과세연도인 2017년도에 발생한 세금 손실에 대하여는 그 해의 추정되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음 과세 12년내에 일반적인 유동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 세금 감면(Descuentos tibutarios) | 세금 감면은 특정 운영에 하여 제공되고 다음을 강조한다. i) 해외에서 지불된 세금 |

⁷⁾ 한계세율(Tarifa marginal) : 초과수익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의 비율

| | ii) 새로운 공식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 |
|-------------------------------|---------------------------|
| | 한 물리적인 기여 |
| | iii) 환경 보호, 보전 및 개선에 대한 투 |
| | 자를 위한 감면 |
| | iv) 연구, 기술개발 또는 혁신에 대한 |
| | 투자를 위한 감면 |
| | v) 특별체제에 속하는 비영리 단체에 |
| | 대한 기부를 위한 감면 |
| | Zonas francas와 국가세관영토와 관련 |
| 이전가격(Precios de tranferencia) | 된 작업과 지점과 영구사업소를 포함하 |
| | 는 해외에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
| | 적용된다 |

(4) 콜롬비아의 무역방어조치

- 가) 콜롬비아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및 보조금 조치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있어 방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있다.
 - 정상적인 무역 운영 과정에서 원산지 국가인 자국의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보다 콜롬비아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때 덤핑수입으로 간주한다. 덤 핑가격에 의한 수입과 덤핑가격으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해 왜곡된 경쟁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조사 중인 제품의 수입에 세관의 권한을 적용한다.
- 나) 이 절차는 2015년 법 1750조에 의해 규제된다.
 - 1994.12.15. 법 170조에 포함된 세계 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WTO SCM Agreement)을 침해함이 없이 1995년 법 299조는 수입재 또는 원재료 및 투입 재의 생산, 운송 또는 수출할 때 원산지, 수출 또는 그 공공 또는 혼합 조직의 국가의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프리미엄, 원조, 혜택, 인세티브 등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이익이 된다.

- 마찬가지로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서 복수 환율의 사용은 보조금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이 법령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혜택을 제공할 때 수입이나 가격지원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상계관세 부과로써, 왜곡된 경쟁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세이프 가드 조치는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제품의 수입증가에 직면해 있는 특정 국내산업이 경제적 조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 WTO 회원국을 관장하는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세이프가드가 있다 : 일반 세이프가드 및 농산물을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 각각은 1998년 법 152조에 의해 규제되는 적용 분야에서 구체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9년 법 1407조에 따라 WTO의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위한 특별 절차가 수립된다.
- 현재 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에있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를 위해 2010년 법 1820조에 설정된 절차를 따른다.
- 다른 한편으로, 국제 상업 협정(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s)에서 수출에 있어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불 공정 상업 행위에 대한 세이프가드 및 시정 권리를 확 립하는 것과 같이 국내 시장의 국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 할 수있는 특별 규칙의 제정을 협상한다.

2) 콜롬비아 수입통관시스템

- (1) 콜롬비아 수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 수입신고 절차 : 콜롬비아의 수입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Negative 방식을 채택하며 수입신고 물품은 국제식별코드 (HS CODE 10단위)를 사용한다. 각 제품에 대한 고유코드 는 콜롬비아 관세율표에 나와있으며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DIAN)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DIAN

Bridgeroote to briggeroote to briggeroote to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콜롬비아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 제출서류: 수입신고 의무자(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입 신고자, 대외무역업체 등)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 관에 제출해야한다.
 - 수출업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 허가, 요구 사항 및 승인이 인가되는 수입면허(필요시)
 - 특별조항 또는 우대조치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필요시)
 - 포장명세서(필요시)
 - 운송서류 : 항공(항공운송장), 해상운송(선하증권), 육로(운송장)
 - 수입액이 단일선적 5,000USD를 초과하거나 분할선적의 합계 5,000USD를 초과하는 경우 : 세관에 가격 신고
 - 관세사(통관 대행)를 통한 신고시 위임장
 - 기타 수입신고시 세관 요청사항

ㅇ 콜롬비아의 수입신고 프로세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١ | | | |
| | | | |
| | | | |

- ①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세관등록신고 자격을 얻기 위해 RUT(Registro Único Tributario : 고유세 금등록부)에 회사등록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등록은 관 세 납부 전에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www.dian.gov.co) 에서 가능하다.
 - RUT(Registro Único Tributario : 고유세금등록부)의 취득 : 일단 회사 또는 지사가 상호 명칭 등록부에 등록되면, 인 증된 RUT가 DIAN에 요청되어야 한다. 절차 요청자가 대 리인이면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원본증명서와 위임장 을 제출해야한다. 해당 RUT가 생성되면 납세코드인 NIT(el 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가 생성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공회의소에 요청해야한다. RUT 취 득 절차는 회사 또는 지사 등록 후 영업일 기준 15일이내 수행한다. 회사 및 지사의 법적대리인은 거주자인지 여부 와 상관없이 납세코드(NIT) 및 전자서명을 보유해야한다. 이는 세금납부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이 공식

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 ② 관세납부를 위해 각 상품은 국제식별코드 HS CODE 10자리로 분류되며, 콜롬비아 관세율표에 나타나있고 DIA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분류가 어려운 경우 DIAN에 세 번 결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법정 최저임금이다.
- ③ 상품에 따라 사전 검사 또는 일부 기관(ICA, INVIMA, 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Ministerio de Transporte, Ministerio de Agricultura, Agencia Nacional Minera, INDUMIL, AUNAP)의 허가대상일 수 있다.

사전 검사 및 허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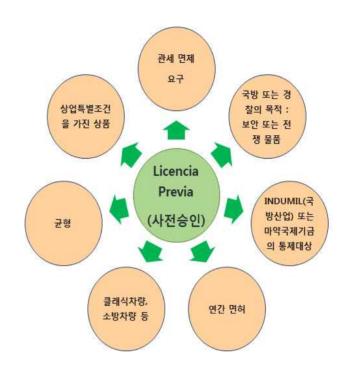
| 상품의 종류 | 사전 승인 기관 |
|---|---|
| 동물건강 및 식물위생증명서 : 산동물, 과일, 꽃, 채소 등 | 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콜롬비아 농업연구소 |
| 의약품, 식품, 위생 및 세재류, 주류, 화장품 등 | INVIMA(Instituto Nacional para la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의약품 및 식품안전부 |
| 멸종위기종 또는 지역 고유종, CITE협약부속서1에 포함된 야생동 식물 등(앵무새,거북이,원숭이등) | ANLA(Autoridad Nacional de Licencias Ambientales) 환경면허부 |
| 낚시용품, 관상어 | AUNAP(Autoridad Nacional de Acuicultura y Pesca) 양식 및 수산부 |
| CCTV (Circuitos cerrados de televisió) | Superintendencia de Seguridad y Vigilancia Privada 보안관리 및 개인 감시 |

| 동식물 |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환경부 |
|----------------|-------------------------------------|
| 광업제품, 보석 및 금속류 | Agencia Nacional Minera 광업부 |
| 예술 및 문화 작품 | Ministerio de Cultura 문화부 |

- ④ 콜롬비아에는 수입의 3 체제가 있다; Libre(자동), Previa(비자동), Prohibida(금지)
 - o Libre(자동): 수입 전 법적요구나 허가를 수행할 때(수입 신고서류, 관세납부, 기술표준 등)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 다.
 - o Previa(비자동): 상품의 세관영역 도착전 콜롬비아 상공부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사전승인'은 대외무역단일창구(VUCE)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 o Prohibida(금지): 어떤 상황에서도 콜롬비아의 정치조직에 서 설립된 상품은 수입될 수 없다.
 - o 수입업자는 수입의 등록 및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통관단일창구 VUCE®(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rior, www.vuce.gov.co)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수입통관을 위하여 개인거래의 경우디지털 서명을 구입해야 하며, CCB(Cámara de Comercio de

⁸⁾ VUCE(Sistema informático que integra el proceso de autorizaciones, permisos, certificaiones y vistos buenos requeridos por las autoridades colombianas para la exportaciones e importaciones) : 콜롬비아 당국에서 수출입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허가, 확인, 인 증 과정 등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VUC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서명(사용자이름과 암호를 부여함)을 획득하여야한다. 통관단일창구는 세관의 수출입신고 및 각 기관의 요건확인 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일원화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 및 공동활용하여효율성을 제고함(출처 : [행정학]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타 국가 적용

Bogorá, 보고타상공회의소)의 자회사인 CERTICAMARA 및 콜롬비아 상공부에 VUCE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명과 암호를 신청해야만 한다.



o 한-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발급된다. 또한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법령에 따라 그 이상의기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① 1란 :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출자의 법적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및 선택적으로 수출업체코드 기재

② 2란: 포괄증명기간: 동일한 수입자가 콜롬비아 또는 한 국으로부터 5란의 상품을 최대 12개월의 특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간 표시, 선적은 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

③ 3란 :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생산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수'로 기재

④ 4란 :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 1란에 표시된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⑤ 5란 : 물품명세 : 각 상품에 대한 물품명세 ⑥ 6란 : HS품목번호 : 6단위까지 ⑦ 7란 : 원산지 기준 : 원산지 특혜기준(A~D 중 선택)에 따 라 기재 A. 그 상품이 제3.1조(a)(i)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 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경우

B. 그 상품이 제3.1조(a)(ii)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A(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C. 그 상품이 제3.1조(a)(iii)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그 상품이 제3.16조(영역 원칙의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⑧ 8란 : 생산자 : 5란의 상품에 대해 생산자인 경우 '예'

기재,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2),(3)을 기재함. (1)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⑨ 9란: 가치평가: 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순비용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CN'을 명기한다.

① 10란 : 원산지 국가 :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 콜롬 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CO'를 기재

① 11란: 비고: 5란의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와 같이,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증명서에 관하여 다른 주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한다.

① 12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 기재.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함.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 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함

* 출처 : http://www.tlc.gov.co/,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서식)

| | | E ORIGEN | | | |
|---|---|---|--|---|-------------------------------|
| ACUERDO E | E LIBRE COMERC | зо Соломві | A-COREA | | |
| Nombre y dirección del exportador: Teléfono: Fax: Correo electrónico: | 2. Periodo de co AAAA MM I Desde: | DD AA | | | /_/ |
| 3. Nombre y dirección del productor: Teléfono(opcional): Correo electrónico (opcional): | Nombre y dire Teléfono; Correo electrón | Fac | | | |
| 5. Descripción de la mercancia(s) | 6, Clasificación Arancelaria del SA# | 7. Criterio de Origen | 8. Productor | 9. Prueba de Valor | 10. País de Origen |
| 4.4 30.4 | - | | | | |
| 11. Observaciones: Certifico que: | | 2765.7 | | | |
| | responsable por e scenar, cuando me formar por escrito las personas a las e I territorio de una e | sea solicitado de cualquier que se le entre o ambas Parte | aración falsa o, la documer cambio que p gó este certif s y cumplen | y emisión ntación nec oudiera afec- ficado. con los req | hecha er esaria ctar la |
| Certifico que: -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este lo aqui declarado. Entiendo que so o relacionada con, este documento. - Me comprometo a conservar y prepara soportar este certificado, y a in exactitud o validez de este, a todas. - Las mercancias son originarias de | sentar, cuando me formar por escrito las personas a las o I territorio de una as en el Acuerdo d | esca solicitado de coalquier que se le entre o ambas Parte e Libre Come | aración falsa a, la documer cambio que p gó este certit s y cumplen reio Colomb | y emisión ntación nec oudiera afec- ficado. con los req | hecha er esaria ctar la |
| Certifico que: -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este lo aqui declarado. Entiendo que so o relacionada con, este documento. - Me comprometo a conservar y prepara soportar este certificado, y a in exactitud o validez de este, a todas. - Las mercancias son originarias de especificados para dichas mercanci. Este certificado consta de | sentar, cuando me formar por escrito las personas a las o I territorio de una as en el Acuerdo d | esca solicitado de coalquier que se le entre o ambas Parte e Libre Come | aración falsa o, la documer cambio que p gó este certif s y cumplen- reio Colomb exos. | y emisión ntación nec oudiera afec- ficado. con los req | hecha er esaria ctar la |
| Certifico que: -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este lo aqui declarado. Entiendo que so o relacionada con, este documento. - Me comprometo a conservar y prepara soportar este certificado, y a in exactitud o validez de este, a todas. - Las mercancias son originarias de especificados para dichas mercancia. Este certificado consta de | sentar, cuando me formar por escrito las personas a las o I territorio de una as en el Acuerdo d | esca solicitado de cualquier que se le entre o ambas Parte e Libre Come o todos sus an | aración falsa o, la documer cambio que p gó este certif s y cumplen- reio Colomb exos. | y emisión ntación nec oudiera afec- ficado. con los req | hecha er esaria ctar la |

(2) 수입의 종류

- ㅇ 콜롬비아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의 종류가 있다.
- 가) 일반수입(Importación ordinarias)
 -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입방식이며, 콜롬비아의 수입자가 일단 통관과 세금의 모든 의무 이행의 확인을 통하여 무 기한으로 자유롭게 물품을 받는다. 수입의 신고의 제출과 수락으로부터 3년후에 확인되며 세관영토내에 물품이 합

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락된다.

나) 일시수입(Importaciones temporales)

- (a) 동일상태에서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 특정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세관영토에 등록된 동일상태에 서의 재수출이 이루어져야하는 수입으로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형이 되지 않아야한다.
- 이러한 방식의 수입은 법적인 지불 또는 관세(관세 및 부가세)에 있어 중지 또는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품이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동일상태에서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에는 2가지 종류 가 있다.

• 단기(De corto plazo)

- 전시회, 박람회 또는 문화 행사에 전시될 목적의 물품과 같은 특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며, 2002년 시행령 2394호의 자본 재화와 그 운영에 필요한 부분품 및 예비품에 사용될 물품 등이 포함된다. 그 기간은 최대 6개월 내에 수입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의 허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일시수입은 일시수입 기간 동안 법적인 지불이나 관세의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De largo plazo)

- 2002년 시행령 2394호 및 그 개정안에 포함된 소제목의 목록에의 자본 재화와 그 부속품, 부분품, 예비품의 수입 에 적용된다. 이러한 수입에 있어 그 최대 기간은 5년이 며, 이 경우에 세금과 관세납부는 콜롬비아의 상품의 영 속기간에 대해 동일한 반기에 있어 분할 납부되며, 통관 을 위한 반기납부시의 환율이 적용된다.

(b) 완전한 개선을 위한 일시수입

- 콜롬비아 세관법령에서의 완전한 개선을 위한 일시수입의 종류
- 자본재의 완전한 개선을 위한 일시수입(Importación temporal para perfeccionamiento activo) : 수리 또는 장치 후에 재수출되는 목적의 자본재와 그 부분품 및 예비품의 일시수입에 있어 세금 및 관세납부는 동일기간동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승인된다.
- 산업공정을 위한 일시수입(Importación temporal para procesamiento industrial) : ALTEX 또는 UAP로 인정된 산업의 변형, 공정 또는 제조에서 사용되어 지는 원재료 또는 투입재의 일시수입에 있어 승인된다. 이러한 수입에 있어 수출재의 부가가치로 사용되는 원재료나 투입재에 있어 관세납부는 면제된다. 이에 따른 재화의 처분은 세관규정에 따라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 수입-수출 특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임시 수입(Plan Vallejo): 대외무역업무의 장려하기 위해 콜롬비아는 세 관등록에 있어 수입-수출 특별시스템 및 Plan Vallejo(발 레호 계획)을 설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출서 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세의 면제 또는 전체 및 부분 중 단과 부가세의 분할납부로써 자본재, 원재료 및 투입재 및 부분품을 수입가능하게 한다. 이 혜택은 재화 또는 최종서비스의 약속을 이행한 자는 특별 프로그램의 주체가될 수 있다.
 - 발레호 계획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직접 운영으로, 원 재료 및 투입재, 자본재, 중간재 또는 부분품의 수입자 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최종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 및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서비스제공을 자신의 명의 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간접 운영으로, 원자재 또는 투입재, 자본재, 중간재 또는 부분품의 수입자는 직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자신의 명의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레호 계획의 현행 양식은 다음과 같다.
 - i) 원재료 또는 투입재를 위한 발레호 계획: 이 양식은 정해진 기간내 전체 또는 부분 수출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 폐기물 또는 잔여물 의 공제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원재료 및 투입재 또는 외부시장에 직접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수출재의 생산에 있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될 재화에 있어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으로 세관영토 내에 허 가된다.
 - ii) 농업부문의 자본재 또는 예비품을 위한 발레호 계획 : 이 양식은 관세의 전체 또는 부분 연기 및 부가가 치세 납부의 면제로써 자본재 및 부분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자본재는 수출재의 생산과정에서 각각의 생산단위의 설치, 확장 또는 교체의 목적이 되어야 하거나, 이러한 재화들의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 여야한다.
 - iii)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발레호 계획 : 자본재 및 그부분품의 일시수입은 수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세의 전체 및 부분공제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로써 허용된다.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자본재와 그 부분품의 FOB 기준 1.5배에 해당하는 최소 가치 와 동등하게 서비스를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 된 수입쿼터의 FOB 기준 20% 가치와 동등하게 보증 은행 또는 회사를 구성해야 하며, 일시 수입되는 자

본재와 그 부분품의 사용을 보증하고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이 자본재와 그 부분품을 양도하거나 분배 하지 않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이 양식은 주요 목적 으로 구성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출에 적용된 다.

- 방송, 유통 및 전기에너지 마켓팅 서비스
- 통신의 특수설계 및 부가가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수출
- 주거 서비스
- 보건 서비스
- 운송 서비스(항공, 해상, 여객 또는 철도)
- 연구와 개발
- 컨설팅 및 관리
-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정보,네트워크,연구 및 개 발, 포장서비스 등)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발레호 주니어 계획 또는 교체
 - 이 양식은 전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처음 납부되었을 때 수출재의 생산에 있어 동일한 양의 원재료 또는 투입재가 사용된 법과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수입품을 통해 수출자에게 교체 또는 대체 권리를 부여한다. 이 교체 권한은 수출되는 생산품의 선적으로부터 12개월 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 국제 리스닝(임대)

- 국제 임대의 수치는 자본재의 장기간 일시수입의 재정 적 지원을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의 5년 이상 국가 세관영역에 속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자본 재의 수입의 기간내에 수입되는 한 동일한 선적이 아닌 부속품, 부분품, 예비품의 장기간 일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납부는 6개월마다 발생한다. 연장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5년이며, 이때 국가내 체류 기간도 동일하다. 이 해당 기간 마지막 분기에 미납된 관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 기타 수입 양식

- 콜롬비아에는 수입의 다른 방식이 있고, 몇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혜택이 있다.
 - 면세 수입
 - 외부 처리를 통한 재수입
 - 동일상태로의 재수입
 - 보증에 따른 수입
 - 변형 또는 조립을 위한 수입
 - 우편 및 긴급전송에 의한 수입
 - 긴급 배달
 - 여행자
 -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o 영구 세관 사용자(UAP : Usuarios aduaneros permanentes)

- 2016년 법390조의 새로운 세관규정이 발효되기 앞서, 각 각의 요건을 이행한 DIAN이 영구 세관 사용자(UAP)로 인정한 회사는 세금과 행정절차에 있어 일련의 의무와 혜택을 가지고 있다. UAP로 등록 및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이전 12개월동안 FOB기준 5,000USD(최근 3년 연평균) 또는 최소 100건 이상의 수출입신고의 대외무역을 수행하였어야 하며, 고액납세자로 분류되는 경우 5,000USD를 6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된 대로 적용되기 이전 3년 이내에 최근 12개월내 2,000USD의 수출자로 입증되면 Vallejo 계획의 소유자인 UAP로 인정될 수 있다.
- 일단 UAP로 등록 및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과 의무

가 있다.

- 수입 상품의 자동처리
- 원재료와 투입재가 수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로서 이용되는데 있어 관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산업공정을 위한 일 시수입 방식으로의 원재료와 투입재의 수입 가능
- DIAN에 대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수행을 보증하는 글로벌 보증이 구성됨
- · ALTEX에 제공된 혜택 이용가능
- · 직전 달에 처리된 상품에 관하여 매월 5일 내에 세관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지불신고서를 제출함

3) 콜롬비아 수출통관시스템

- o 콜롬비아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관세청(DIAN)에 수출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고유의 세금등록부(RUT: Registro único Tributario)에 등록이 되며 관세납부를 위한 코드가 발급이 된다. 이는 DIAN 또는 보고타의 Supercades 에서 처리할 수 있다.
- o 통관단일창구(VUCE) : 수출업자는 콜롬비아 상공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에 무역을 위한 통합단일창구(VUC E9))에 등록해야 한다.

⁹⁾ VUCE(Sistema informático que integra el proceso de autorizaciones, permisos, certificaiones y vistos buenos requeridos por las autoridades colombianas para la exportaciones e importaciones) : 콜롬비아 당국에서 수출입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허가, 확인, 인 증 과정 등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VUC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서명(사용자이름과 암호를 부여함)을 획득하여야한다. 통관단일창구는 세관의 수출입신고 및 각 기관의 요건확인 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일원화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 간의 정보를 연계 및 공동활용하여효율성을 제고함(출처 : [행정학]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타 국가 적용

통합단일창구(VUCE) 등록화면



- VUCE: 대외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로 21개 주 기관과 연결 되어있고 62000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음. 2005년 이래로 450만건의 수출입등록이 이루어졌음. 월간 평균 처리건수(법 인 15000건, 개인 13900건)
- 등록된 기관으로는 상공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광업자원부(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환경 및 개발부(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환경인증기관(Autoridad Nacional de Licencias Ambientales, ANLA), 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 보건복지부(Ministerio de Salud y de la Protección Social), 외무부(Ministerio de Salud y de la Protección Social), 외무부(Ministerio de Salud y de la Protección Social), 농업 및 농촌개발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y del Derecho), 상공회의소(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

마약기금(Fondo Nacional de Estupefacientes, FNE), 국가수산국 (Autoridad Nacional de Acuicultura y Pesca, AUNAP), 콜롬비아 지질서비스(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SGC), 농축산연구소(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ICA), 국립 약품 및 식품 감시원(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INVIMA), 감시감독및 사설보안(Superintendencia de Vigilancia y Seguridad Privada, Supervigilancia), 광업진흥청(Agencia Nacional de Minería, ANM), 국립 탄화수소기구(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ANH), 콜롬비아 군 사산업(Industria Militar De Colombia, INDUMIL), 세무관세청(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IAN), 경찰-국회의사당(Policía Nacional-Dirección Antinarcóticos)

- o 콜롬비아 상품이 협상 등을 통한 특혜 또는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요구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라틴아메리카지역과 유럽연합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홈페이지 (www.dian.gov.co)를 통해 발급되는 기관방식이며 미국, 캐나다, 과테말라, 엘사바도르, 온두라스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콜 FTA 협상에 있어서는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o 콜롬비아 상품 수출 승인을 위한 해당 기관(농업연구소, 환경 부, 의약식품안전부, 광업부 등) 사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 o 국제운송의 계약을 위해 화물 또는 해상 대리인을 통해 수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액이 10,000USD 이상이 경우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 수출통관시 제출서류 : 상업송장, 운송장, 포장명세서, 사증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필요시), 수출신고서

- ㅇ 기타 콜롬비아의 수출시스템
 - Exportafácil EMS



-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전국 우편 사업자 4-72(Nacional Postal Operator)를 통한 우편 거래에 의한 간소화 된 수출 시스템. Exportafácil 시스템은 수출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외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공식화와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
- 특징 : 수출 프로세스 간소화와 비용 절감, 신속하고 효율적 인 상품 검사 과정과 세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세관 이 없는 도시에서의 수출 용이, 신고된 금액의 100%까지 적 용되는 상품에 대한 보장됨
- 대상 : 단일 세금 체제 RUT에 수출 업체 또는 국제 마켓터로 등록된 회사, 콜롬비아에서 공식 우편 회사인 4-72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모든 지역의 중소기업

3. 한국-콜롬비아 FTA

1)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 체결협정 | 체결국가 | 체결시점 |
|-----------------------------|--|------|
| 안데안공동체(CAN ¹⁰⁾) |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볼리비아 | 1969 |
| 콜롬비아-니콰라가 부분적 교류확대 협정 | 니카라과 | 1980 |
| G3 협정 | 멕시코 | 1995 |
| 콜롬비아-Caricom | 카리브 공동체 가입국 (바베이도스,그레나다,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14개국가) | 1998 |
| 콜롬비아-쿠바 경제보완협정 | 쿠바 | 2000 |
| CAN-Mercosur | 메르코수르 가입국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 2004 |
| 콜롬비아-칠레 FTA | 칠레 | 2007 |
| 콜롬비아-중미3개국 | 엘사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 2007 |
| 콜롬비아-EFTA | 스위스,아이슬랜드,리히텐슈타인,노 르웨이 | 2008 |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캐나다 | 2011 |
| 콜롬비아-미국 FTA | 미국 | 2012 |
| 콜롬비아-EU연합 | EU국가 | 2012 |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 2013 |
| 콜롬비아-한국 | 한국 | 2016 |
| 콜롬비아-이스라엘 | 이스라엘 | 발효대기 |
| 콜롬비아-파나마 | 파나마 | 발효대기 |
| 콜롬비아-일본 | 일본 | 협상중 |
| 콜롬비아-터키 | 터키 | 협상중 |

¹⁰⁾ 안데안공동체(CAN : la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 중남미국가 5개국(콜롬비아, 볼리비아,에콰도르,페루,칠레)이 모여 결성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동시장 발전을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설립당시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06 탈퇴하고 칠레는 '76 탈회한 후 '06 준회원국으로 재가입

2) 한국-콜롬비아 FTA의 주요 내용

가. 한-콜롬비아 FTA 관세양허 수준

o 발효 후 10년 이내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 철폐될 것이며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은 한국 82.38%, 콜롬비아 60.64%임

| 어른 미국 | 한국 측 양허 | | 콜롬비아 측 양허 | |
|--------|---------|-------|-----------|-------|
| 양허단계 | 품목 수 | 비중(%) | 품목 수 | 비중 |
| 즉시철폐 | 9,787 | 82.38 | 4,390 | 60.64 |
| 무관세 | 1,932 | 16.26 | 265 | 3.66 |
| 3년 | 268 | 2.26 | 33 | 0.46 |
| 5년 | 670 | 5.64 | 1,516 | 21.35 |
| 5년 소계 | 10,725 | 90.27 | 5,969 | 82.46 |
| 7년 | 136 | 1.14 | 503 | 6.95 |
| 9년 | _ | - | 1 | 0.01 |
| 10년 | 558 | 4.7 | 529 | 7.32 |
| 10년 소계 | 11,419 | 96.11 | 7,003 | 96.73 |
| 10년 초과 | 304 | 2.56 | 184 | 2.54 |
| TRQ | 5 | 0.04 | 6 | 0.08 |
| 양허 제외 | 153 | 1.29 | 47 | 0.65 |
| 계 | 11,881 | 100 | 7,240 | 100 |

* 출처 : 외교부 FTA 정책과

나. 한국-콜롬비아 FTA 주요 품목별 양허단계

| 한국 측 양허품목 | 양허단계 | 콜롬비아 측 양허품목 | | |
|--|-------|---|--|--|
| 커피원두, 볶은커피, 동/ 알루미늄/아연과 제품, 철 광, 금, 은, 비금속광물, 석탄, 흑연, 윤활유, 정밀 | 즉시 철폐 | 무선전화기,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 기), 도금강판, VCR합성수 지(폴리에틸렌등), 정밀화 | | |

| 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타이어, 합성수지, 가죽제 품(가방,벨트등), 의류(모 피, 재킷, 코트류 등), 섬 유, 직물류, 판유리, 완구, 시계 등 | | 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직물류(편직물,재생직물등),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베어링, 밸브, 커피, 음료, 라면, 비스킷 등 |
|---|---------------------------------|--|
| 커피조제품, 코코아조제 품, 밀, 연어, 원유, 자동 차부품 등 | 3년 철폐 | 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등 |
| 페로니켈, 우황, 어육, 열 대어, 장미, 백합, 국화, 마니옥, 바나나, 아보카 도, 효모류, 빙과류, 위스 키, 단판, 제재목 등 | 5년 철폐 | 컬러TV, 에어컨,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섬필라멘트사등), 의류, 바나나, 장미, 국화 등 |
| 참다랑어, 뱀장어, 골뱅이, 기타절화, 파인애플, 수박, 두리안, 망고, 과일주스, 스웨터, 남성바지 등 | 7년 철폐 | 합성수지(폴리스틸렌, 폴 리프로필렌 등), 폴리에스 터직물, 화장품, 산업용 차 량 타이어, 안전유리, 딸 기, 당근,기타 화초, 등 |
| - | 9년 철폐 | 중형 디젤 승용차(4×4) |
| 냉동감자, 양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조란, 요구르트, 건 조포도, 옥수수, 살구, 자두, 멜론, 소시지, 소스류, 잎담 배, 제조담배, 합판, 건축용 목제품, 니켈괴 등 | 10년 철폐 |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 차, 세탁기, 브라운관TV, 가죽제품(가방,벨트등), 신 발, 완구류, 감, 과일주스, 두류 등 |
| - | 10년 철폐 (APB ¹¹⁾) | 돼지고기, 사료, 소시지 등 |
| 닭고기, 오리고기, 감, 표고버섯, 조제저장, 송 로, 섬유판, 파티클 보드, 일부 합판 | 12년 철폐 | 냉동오리고기, 사료용첨가 제,아이스크림,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 등 |
| 난황, 계란 | 12년 철폐 (2년 유예) | - |
| 닭고기(냉동) | 13년 철폐 | - |

| 건조 표고버섯, 필터담배 등 | 15년 철폐 | 요구르트, 콩, 사탕수수, 잎담배 등 | | |
|---|--------------------------------|--|--|--|
| | 15년 철폐(APB) | 사료, 옥수수가루, 돈지, 참기름 등 | | |
| 닭고기(다리, 날개, 가슴), 치즈, 단감, 딸기, 복숭아, 생강, 꿀 등 | 16년 철폐 | 버터, 치즈, 인조꿀, 과일 주스, 만다린 등 | | |
| 냉동잣, 주류제조용 발효 주정 | 16년 철폐 (2년 유예) | | | |
| 신선포도 | 16년 철폐 (계절관세) | | | |
| 만다린 | 16년 철폐(ASG ¹²⁾) | | | |
| | 18년 철폐 | 미절단 닭고기(냉동) | | |
| | 18년 철폐 (5년 유예) | 닭고기 절단육 및 설육(신 선, 냉장, 냉동) | | |
| 소 식용설육 | 19년 철폐 | 소 식용 설육 | | |
| 정육 | 19년 철폐(ASG) | 정육 | | |
| | 20년 철폐(APB) | 미절단 닭고기(신선, 냉장 등) | | |
| 탈・전지분유 | TRQ | 탈·전지 분유 | | |
| 쇠고기, 밀크·크림, 연 유, 마늘, 양파, 고추, 감 자, 오렌지, 사과, 배, 감 | 양허제외 | 쌀, 쇠고기, 우유, 분유, 마 늘, 양파, 고추, 팥, 녹두, 오렌지, 감귤류, 정당 등 | | |
| 귤, 인삼류, 냉동명태, 냉 동민어 등 | 양허제외(APB) | 밀크·크림, 버터, 전분, 사탕수수 | | |
| 쌀 및 쌀 관련 품목 | 협정제외 | | | |
| | | | | |

¹¹⁾ APB : 콜롬비아 안데안 가격밴드 적용유지 품목, 고정관세철폐 기간에 걸친 균등 철폐(변동관세는 유지)

¹²⁾ ASG : 농산물 셰이프가드 설정 품목

- 3)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추진성과
 - 가. 한-콜 FTA 발효 이후 한국 측 추진실적
 - o 201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던 콜롬비아로의 수출이 세계 유가의 하락 및 페소 평가절하의 원인으로 2015년부 터는 감소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제 조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2017.11월 對콜롬비아로의 10대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753백만달러로 전년도 (853백만달러) 대비 3.54% 감소하였다.
 - o 한국의 對콜롬비아로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분야는 대부분 5년간 관세철폐대상으로 FTA 발효 5년이후(2021년)부터 FTA 성과를 크게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완전철폐시 현재 콜롬비아로 진출되어있는 콜롬비아와의 기존자유무역협정 체결지역인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시장과의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FTA 체결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 측 주요 수출품목 양허내용

| 품목명 | 기존세율(%) | 양허유형 | | |
|---------|---------|--------------------|--|--|
| 승용차 | 35 | 9년(디젤 중형 4×4), 10년 | | |
| 화물자동차 | 10~35 | 0,7,10 | | |
| 자동차부품 | 5~15 | 0,5 | | |
| 타이어 | 5~15 | 0,5,7 | | |
| 컬러 TV | 20 | 5 | | |
| 냉장고 | 5~20 | 0~12 | | |
| 에어컨 | 10~15 | 0~5 | | |

| 세탁기 | 15~20 | 5~12 |
|-----------|-------|------|
| 섬유 | 0~20 | 0~10 |
| 의류 | 20 | 0~10 |
| 플라스틱 | 0~20 | 0~10 |
| 철강 및 철강제품 | 0~20 | 0~20 |

^{*} 중남미3위 내수시장과 협력.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라(한-콜FTA 상세설명자료)

나. 한-콜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 측 추진실적

- o 한-콜 FTA 공식 발효 이후 對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은 광물, 커피, 농산물 등 1차 산업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관세 즉시철폐품목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對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 수입의 경우 FTA 혜택으로 공식발효 이전 대비 30%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섬유분야에서 또한 2016년 5,224달러에서 24,924달러로 377% 증가함을 보여 콜롬비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 콜롬비아의 한국으로의 비광물 에너지제품의 판매량은 2010 년 145백만달러에서 2016년 184백만 달러로 27% 증가했다. 또한 '16.7.15 한-콜 FTA 공식발효 이후 비광물 에너지제 품의 수출은 '17.5까지 32.5% 증가했다고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 María Claudia Lacouture는 보고했다.
- o 한편으로 비농업수출액은 한-콜 FTA 공식발효 이후 1년간 전년도 137백만달러에서 218백만달러로 약60% 증가했고, 농산물은 협상이전 70백만달러에서 89백만달러로 증가하는

^{*} KOTRA 국가정보 - 콜롬비아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등 한-콜 FTA 체결은 콜롬비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여 주었다.

o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은 한국은 아시아지역으로의 콜롬비아 최초의 FTA 체결국가이며, 수출 가능한 국가의 공급을 다각화하는 새로운 단계라고 보고했으며, 콜롬비아보다 많은 인구와 2.6배 높은 GDP는 한-콜 FTA협정이 콜롬비아 측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콜 FTA 체결이후 콜롬비아의 주요산업 對한국 수출현황

| 분야 | 수출액(백만달러, FOB 기준) | | 상 승률 (%) | 비율 | |
|--------|-------------------|---------|----------------------|------|--|
| 七叶 | 2016 | 2017 | (경 정절(%) | 는 전 | |
| 전체 | 402,062 | 457,039 | 13.7 | 100 | |
| 광물에너지 | 217 244 | 256,051 | 17.5 | 56.0 | |
| 비광물에너지 | 217,844 | 200,987 | 9.1 | 44.0 | |
| 농업 | 92,966 | 94,808 | 2.0 | 20.7 | |
| 농축산업 | 8,299 | 8,919 | 7.5 | 2.0 | |
| 제조업 | 82,953 | 97,261 | 17.2 | 21.3 | |

- 콜롬비아 측은 FTA 발효 후 수혜품목으로 커피류(즉시~3년), 화훼류(3년~5년), 바나나(5년), 기타 과일류(5,7,10년), 채소류(5,7,10년), 담배류(10~15년), 설탕(16년) 등을 예상하였다.
- o 특히 콜롬비아는 FTA발효 이후 對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696백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의 커피 문화 증가로 커피원두 및 분쇄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콜롬비아 측 주요 수출품목 양허내용

| 분류 | HS CODE (6단위) | 품목명 | 기존세율 (%) | 양허세율 (%) | 양허단계 |
|-----------------------|------------------|---|-------------|-------------|------|
| 커피 | 090121 | Café tostado, sin descafeinar, molido o en grano(카페인을 제거하 지 아니한 것) | 8 | 0 | 0 |
| 71-1 | 210111 | Extractos, exencias y concentrados de café(인스턴트 커피) | 8 | 5.3 | 3 |
| | 060319 | Flores y capsullos frescos, cortados para ramas o adornos (튤립) | 25 | 20~22.5 | 5~10 |
| 절화 | 060311 | Rosas frescas, cortadas para ramas o adornos(장미) | 25 | 20 | 5 |
| | 060312 | Claveles frescos, cortados para ramos o adornos(카네이션) | 25 | 16.7 | 3 |
| | 180100 | Cacao en grano(카카오 생것, 볶은 것) | 2~8 | 0~6.4 | 5 |
| 카카오 제품 | 180400 | Manteca de cacao(코코아 버터(지 및 유)) | 5 | 3.3 | 3 |
| 세눔 | 180620 | Preparaciones alimenticias que contengan cacao(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 8 | 5.3 | 3 |
| | 200899 | Pulpas de frutas(포도,사과) | 45 | 38.6 | 7 |
| 과육 및 과일의 저장품 | 200799 | Conservas de frutas(잼, 과실젤리 및 마말레이드) | 30 | 24 | 5 |
| 알코올 | 220840 | Ron y aguardiente de cana o tafía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 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 20 | 13.3 | 3 |
| 음료 | 220870 | Licores de anís(오가피주) | 20 | 16 | 5 |
| | 220300 | Cerveza de malta(맥주) | 30 | 25.7 | 7 |
| 초콜릿 제과 | 180690 | Chocolatesypreparacionesalimenticiasquecontengancacao(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40 | 5.3~36 | 3~10 |

| | 170490 | Bombones, caramelos y pastillas sin cacao(캐러멜) | 8 | 6.4 | 5 |
|-----------------------|-------------------|--|-----|-----|---|
| | 170410 | Chicles y gomas de mascar, recubiertos de azúcar(추잉껌) | 8 | 5.3 | 3 |
| 화장품 | 330499 | Las demás preparaciones de belleza, maquillaje y para el cuidado de la piel(기초화장용 제품 류) | 6.5 | 0 | 0 |
| | 330590 | Las demás preparaciones capilares (헤어린스) | 5 | 0 | 0 |
| | 330510 | Champús(샴푸) | 5 | 0 | 0 |
| 가죽 제품 | 420221 | Bolsos de mano,incluso con bandolera o sin asas, con la superficie exterior de cuero natural, de cuero artificial o regenerado de cuero barnizado(뱀 의 것) | 8 | 0 | 0 |
| 및 - 수영복 | 611241 | Bañadores, de punto, de fibras sintéticas, para mujeres o niñas (합성섬유제의 것) | 13 | 0 | 0 |
| | 621210 | Sostenes(corpiños), incluso de punto(면제의 것) | 13 | 0 | 0 |
| 캐주얼 및 스포츠 의류 | 620292/ 620192 | Anoraks, cazadoras y artículos similares de algodón para hombres y mujeres(면제의 것/면제의 것) | 13 | 0 | 0 |
| | 611030 | Abrigos, chaquetones, capas, anoraks, cazadoras y artículos similares de punto(합성섬유제의 것) | 13 | 0 | 0 |

^{*} Procolombia(El camino hacia las oportunidades en el mercado asiático)

4. 태평양 동맹

- 1) 태평양동맹 현황
 - 가. 태평양동맹의 정의
 - 대평양동맹(La Alianza del Pacífico)은 환태평양에 위치한 중남미 4개 국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구성된 지역통합기구로 2011.4에 설립되었으며 2012.6.6. 정식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에 서명되었다.
 - ㅇ 태평양 동맹 회원국 현황(지도)



- ㅇ 태평양 동맹 회원국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칠 레 : 64개국과 총 26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 콜롬비아 : 62개국과 총 14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 멕 시 코 : 53개국과 총 20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 페 루 : 52개국과 총 20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 o 태평양동맹에는 전 세계 52개 국가가 옵서버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 현황

| 아메 |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 | Ĥ | 유럽 | | |
|-------|---------------|-----|-------|-------|-----------|------|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이집트 | 중국 | 독일 | 이탈리아 | 호주 |
| 캐나다 | 온두라스 | 모로코 | 한국 | 오스트리아 | 리투아니아 | 뉴질랜드 |
| 코스타리카 | 파나마 | | 인도 | 벨기에 | 노르웨이 | |
| 에콰도르 | 파라과이 | | 인도네시아 | 크로아티아 | 네덜란드 | |
| 엘살바도르 | 도미니카 공화국 | | 이스라엘 | 덴마크 | 폴란드 | |
| 미국 | 트리니다 드토바고 | | 일본 | 슬로바키아 | 포르투갈 | |
| 과테말라 | | | 싱가포르 | 슬로베니아 | 영국 | |
| | | | 대만 | 스페인 | 체코 | |
| | | | | 핀란드 | 루마니아 | |
| | | | | 프랑스 | 스웨덴 | |
| | | | | 그루지아 | 스위스 | |
| | | | | 그리스 | 터키 | |
| | | | | 헝가리 | 우크라니 아 | |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로서의 지침

【 태평양동맹 옵서버국가로서의 참여 지침 】

- 1. 태평양동맹의 회원이 아닌 지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옵 서버국가로 참여할 수 있다.
- 2. 옵서버국가는 태평양동맹의 기본협정에서 설정된 원칙과 목표를 공유한다.

- 3. 옵서버국가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태평양동맹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서 임시 의장에게 서면 요청을 해야한다.
- 4. 이사회는 기본협정 10조에 의해 옵서버지위를 부여할 것이고 그 결정을 임시 의장에게 보낼 것이다.
- 5. 옵서버회원국은 사전 동의에 따라 초대된 태평양동맹의 회의 및 의장과 각료 발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의장 및 각료 발의에는 다른 기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각 회의 또는 발의에 해당하는 계층의 대표자만이 참여 할 수 있다.
- 6. 옵서버국가는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적어도 절반 이상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신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그 결정은 임시 의장에게 전달될 것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옵서버국가는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7. 옵서버국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전동의에 따라 초대된 태평 양동맹의 회의 및 발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8. 옵서버 국가는 후 신청서가 수락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태평 양동맹의 가입절차를 시작해야한다. 규정된 기간내에 옵서버국가 는 이런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사전에 이의제기를 들을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 효력을 위해 새로운 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 9.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협정 17조에서 확인된 대로 다른 의견 이 없는 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이미 태평양동맹의 회원국이되기 위한 후보자로 간주된 옵서버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8항에서 언급된 기간은 임시의장이 이 가이드라인을 각국에 알린

날짜로부터 시작된다.

- 10. 옵서버국가의 지위는 기본협정에서 설정된 원칙과 목표에 약속 과 동맹의 업무의 지속에 관심을 갖는 한 유지될 것이다. 역시 언급된 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옵서버 국가 가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태평양동맹의 회원국이되는 한 유지될 것이다.
- 11. 동의에 의해 회원국은 역시 임시회장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평양동맹의 회의 및 발언에 참여에 초청자를 소집할 수 있다.
- 12. 각 회의에 앞서 옵서버 회원국과 참석자들은 참여하게 될 회의 및 발의의 부문에서 논의될 주제들이 명시된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 13. 통지는 옵서버회원국들과 임시의장을 통한 초대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 14. 회원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초대자와 마찬가지로 옵서버국가들은 참석하는 태평양동맹의 다른 발언에 접근하거나 교환하는 정보에 대한 기밀 또는 유보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alianzapacifico.net(태평양동맹)

나. 태평양동맹의 목적

 이 동맹의 설립목적은 동맹 회원국 간 경제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정치, 경제, 협력 및 통합의 메커니즘이다. 태평양 동맹 회원국은 재화, 용역,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 및 관세 인하, 무역장벽 축 소, 분쟁 해결, 수출입 업무 합리화, 무역의 원활화를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및 기회를 창출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회원국 간에는 인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상호 제공하고 비자 면제를 통하여 관광 및 비즈니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태평양동맹의 설립효과

- 대평양 동맹 설립 이후, 세계 은행 Doing Business 2016에 의하면 중남미국가와 카리브해에서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사업 수행의 용이성의 상위를 차지한다.(1위 멕시코, 2위 칠레, 3위 페루, 4위 콜롬비아)
- 대평양 동맹국가의 GDP는 중남미국가 총GDP의 39%를 차지하였고, 중남미 대외무역의 약50%, 외국인 직접투자의 44%를 차지하였다.

라. 태평양동맹 기본협정문 주요내용

- Asuntos Institucionales(제도 문제): 태평양동맹이 포함하는 제도 및 징계분야뿐만 아니라 태평양 동맹의 규제 조항의 적용 또는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민첩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규제
- Comercio e Integración(무역 및 통합): 관세의 협력과 무역의 용이성과 마찬가지로 관세의 자율화, 원산지 규정,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애, 위생과 식물위생의 조치와 관련된조항을 규제한다.

- o Comite de Expertos que analiza las propuestas del CEAP (CEAP¹³⁾ 제안의 분석 전문가 위원회): CEAP (Business Council of Pacific Alliance)를 통해 회원국에 대한 민간 부 문의 제안을 검토한다.
- Compras Publicas(공공구매):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정부 기관이 물품과 서비스 조달의 품질 및 가격 면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 구매 시장에 대한 접근의 방면에 서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약속을 설정한다.
- o Cooperación(협력): 교육, 환경 및 기후 변화, 혁신, 과학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프로젝트를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o Cultura(문화): 태평양동맹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국제적으로 구축하고 계획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의 높은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문화와 창조 산업 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 Educación(교육): 태평양동맹 회원국 국민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교육 통합의 관계를 강화하고 태평양 동맹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 o Estrategia Comunicacional(커뮤니케이션 전략): 세계 경제 틀에서 태평양동맹은 세계 경제 틀에서 회원국 간에 경제 발전, 무역, 경쟁력 및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통

¹³⁾ CEAP: Consejo Empresarial de la Alianza del Pacifico 태평양 동맹의 경제인협의회

합의 모델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한다.

- o Genero(성별) : 태평양 동맹의 일자리 내에서 성 관점을 횡 단 요소로 통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o Innovaón(혁신): 태평양동맹과 그 회원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도구로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태평양동맹 회원국에서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계획, 제안 및 조정한다.
- o Mineria(광업): 생성 부문에 대한 공공 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생산지표 및 경제영역의 이용가능한 자원의 지적조사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 지역 사회의 참여, 토착 개발, 산업안전, 혁신, 수자원과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교환하고 허용및 장려한다.
- Movimiento de Personas de Negocios y Facilitación para el Transito Migratorio(비즈니스 인력의 이동과 이주를 위한 촉진): 안전한 이주와 같이 태평양동맹 내에서 완전한 관 점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순환을 촉진한다.
- Propiedad Intelectual(지적 재산): 공동 행동의 개발과 이미 이 분야에서 획득한 비교를 심화하는 목적으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o PYMES(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태평양동맹이 제공하는 기회, 경제 서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 o Relacionamiento Externo(대외 관계): 태평양동맹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및 제3자간에 영구적이고 결실한 대화의 설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Servicios y Capitales(서비스 및 자본): 국경 간 서비스, 전자 상거래, 해상 운송, 통신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서비스 및 투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보안 규칙을 수립한다.
- o Transparencia Fiscal Internacional(국제 조세 투명성) : 세금 및 재정 문제에 있어 더 나은 관행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 o Turismo(관광): 태평양동맹에서 관광객 흐름을 증대시키려는 이니셔티브 디자인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출처 : https://alianzapacifico.net/ ABC-2017 Alianza del Pacífico
 - 2) 한국과 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교역현황
 - 가. 한국-멕시코 교역현황
 - 멕시코는 북미와 중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석유, 은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브라질 다음으로 2017년
 GDP 기준 중남미 제2의 경제부국으로 우리나라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주요 투자국가 중의 하나임
 - 최근 멕시코 경제는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 지 적자폭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를 비롯하여 '15 기준으로 15개 FTA협정, 46개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는 석유 및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미협정상태임. 최근 멕시코는 대평양동맹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가로 멕시코와 FTA체결국가와는 무관세로 제품의 수출이 가능하기때문에 향후 한국과 FTA 체결국가인 콜롬비아를 통한 멕시코로의 진출이 기대됨
- 멕시코의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가 : NAFTA, G3, 코스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AELC(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 타리카, 볼리비아, 니카라과, 칠레, EU국가, 이스라엘, TN(엘사중미5개국(온두라스, 엘사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하지만 '13 한국 관세청이 워크숍을 통해 멕시코에 한국의 선진 관세 행정기법을 전수하고 '14 한국-멕시코 간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대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전 세계 7위 및 중남미 1위 제조국가 로 국내 진출기업으로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 유라, 현 대모비스, 만도 등이 있음.
- o 멕시코의 對한국으로의 주 수출품목은 광물, 광물성 연료, 자동차 부품 등이고, 주 수입품목은 멕시코 진출기업의 부 품소재 및 전자 부품등이 주로 차지한다.

멕시코 현지 진출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건설, KMS, POSCO, 현대트랜스리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동부대 우일렉트로닉스, 삼성SDI, KOMEX-GAS, 대우인터내셔널, KST, 현대다이모스, LG이노텍 등

멕시코의 對한국 수입 및 수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 | 분 | 20 | 14 | 2015 | | 2016.1분기 | |
|-------|---|--------|-----|--------|------|----------|------|
| 수 | 입 | 13,771 | 3.4 | 14,618 | 3.7 | 3,041 | 3.41 |
| 수 | 출 | 2,027 | 0.5 | 2,770 | 0.73 | 474 | 0.56 |

태평양동맹 회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6.1분기 | 2017.1분기 |
|-----|------|-------|------|----------|----------|
| 멕시코 | 829 | 1,024 | 434 | 251 | 69 |
| 칠레 | 41 | 31 | 37 | 6 | 173 |
| 페루 | 403 | 284 | 233 | 51 | 72 |

※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나. 한국-칠레 FTA 추진현황

-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수출입 통관시스템이 가장 선진화 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04년 한국-칠레 FTA 발효를 포함하여 전 세계 59개의 가장 많은 국가와 지역무역협정 을 체결한 국가임
- ㅇ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캐나마, 멕시코, 코스타리

카, 엘살바도르, EU국가, 미국, 한국, EFTA, 중국, P4(싱가 포르,뉴질랜드,브루나이,칠레), 일본, 파나마, 온두라스, 페 루, 호주, 콜롬비아, 과테말라, 터키,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 한국-칠레 FTA 발효 이전인 '03년 대비 10년간 교역량 이 약 4.5배(수입액 4.4배, 수출액 4.8배) 증가함. 또한 FTA 발효 이전 한국은 칠레의 수입대상국 8위를 차지하였으나 5년후인 '08년도에는 5대 교역대상국으로 상향됨
- 칠레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구리 및
 와인, 돼지고기 등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한국 수입시장
 내에서 칠레산 와인, 돼지고기 점유율이 증가됨
- o 칠레의 對한국 천연가스 부문에서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한국의 對칠레에 대하여 차량, 건설 중장비, 철강 부문에 대해 수출이 증가함
- 특히,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물차 등 분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수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칠레 무역시장 내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한 칠레 무역교역 부문으로는 휴대폰 부문으로 칠레 휴대폰 시장내에서는 삼성 등 한국산 스마 트폰이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음
- o 최근 중국, 대만 등의 對칠레 수출 증가로 한국제품이 가 격 경쟁력에서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남미 시 장내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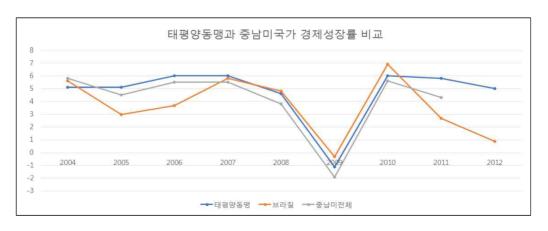
인기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한국은 칠레의 아시아국가 중 첫 번째 FTA 체결국으로 한국-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칠레 교역시장 내에서의 이미지는 제고되었으며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칠레 현지 무역시장으로의 진출 한국기업이 점점증가하는 점에서 한국-콜롬비아 FTA 체결과 비교하여 향후 콜롬비아 무역시장 내 한국제품의 진출 효과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o 칠레 현지 진출기업 : LG전자, LG상사, PRM(LS-NIKKO), SK건설, STX중공업, 금호타이어, 동부대우전자, 두산중공업, 범한판토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다. 한국-페루 FTA 추진현황

- 2011.8.1. 한국-페루 FTA 공식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량
 은 꾸준히 증가함.
- o 한국-페루 FTA 발효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여 5년이 지 난 2016년 한국의 對페루 수출액 2억1,055만달러(22.2%) 증 가 및 수입액 2억5,545만달러(24.5%) 증가함
- 특히, '14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수출실적이 크게 향상됨
- o FTA 발효이후, 페루는 '14 총 소비량(5억9천만달러)의 43%를 차지하는 주로 소비재 부문을 수입하였으며, 주로 차량과 휴대폰 분야 등 비전통적 부문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였음.

- 페루입장에서는, 2011년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출 분야인 광업부문은 4억1,900만달러, 농업부문은 8백만달러로 주로 전통적인 부문에서 2011 ~ 2015 4년동안 약 168% 증가함
- o 페루의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가: 안데스공동체, 남미공동시 장, 멕시코, 쿠바, 칠레, 싱가폴, 미국, 캐나다, 중국, 태국, EU국가, EFTA, 일본,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 o 페루 현지 진출기업: LG전자, SK이노베이션, 동부대우전자, 대원수산, 삼성전자, 소프트닉스, 인트라월드와이드, 포스코건설, 포스코대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 3) 태평양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활용방안
 - 남미 대표 지역공동체인 남미공동체 MERCOSUR¹⁴⁾(브라질, 아르 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중심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성격으로 인하여 점차 그 영향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 최근 2005년 이후 중남미 역내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태평양동맹 회원 4개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출처: 태평양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World Development Indicator)

¹⁴⁾ MERCOSUR(남미공동체):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남미국가(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가 1991년 결성한 남미 대표 지역공동체로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했다가 2017년 탈퇴하여 4개국으로 구성됨

- o 이와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회원 4개국가 모두 적극적인 무역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외국인 해외투자 유치로 외국인기업이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Doing Business 평가순위에서도 중남미 1위~4위를 선점하고 있다.
- 대평양동맹 회원국의 교역 상대국가는 주로 미국, 중국, 브라 질, 한국 등이며 현재까지는 주 수출품목이 1차 산업에 집중 되어 있는 국가들로 교역량이 미미한 편이지만, 이들 태평양 동맹 회원국 간에는 수출입에 있어서 무관세를 적용하기 때 문에 향후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된다.

태평양동맹 역내 교역량('12 수출액기준)

(단위:백만달러)

| | | 수입국 | | | | 태평양 | 세계 |
|-------|------|-------|-------|-------|-------|--------|--------------------|
| | | 칠레 | 콜롬비아 | 멕시코 | 페루 | 동맹 | ^I / I |
| | 칠레 | _ | 915 | 1,349 | 1,798 | 4,063 | 78,277 |
| 入えつ | 콜롬비아 | 2,189 | _ | 835 | 1,582 | 4,606 | 60,666 |
| 수출국 | 멕시코 | 2,251 | 5,592 | _ | 1,527 | 9,372 | 369,174 |
| | 페루 | 1,881 | 829 | 439 | _ | 3,150 | 38,657 |
| 태평양동맹 | | 6,322 | 7,336 | 2,624 | 4,908 | 21,192 | 546,774 |

 한국과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긴말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3개국은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 중 칠레는 한국의 첫 번째 FTA 체결국 이다.

- 한국과 이들 국가간의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
 근 점점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칠레는 FTA 체결이후
 수출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여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o 한국의 對중남미국가로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류, 기계류 등이 있다. 그리고 태평양동맹 회원국가로부터의 對 한국의 수입 품목은 주로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품으로 경 제적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경제발전의 공동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보완관계를 가진다.
- 멕시코는 일본과, 콜롬비아는 한국과, 칠레 및 페루는 한, 중, 일 아시아 3개국 모두와 FTA 체결하는 등 이들 회원국은 모 두 아시아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콜롬비아의 유일한 아시아 상대 교역국이라는 점은 콜롬비아 를 통해 기타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 가들의 우위의 입장으로 콜롬비아로의 투자진출에 있어 일본 과 중국에 앞서 적극적인 태도로 선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대평양동맹의 기본협정문에서 볼 때, 이들 회원국은 시장 및 사회, 경제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통합에 있어 아시아 · 태평양지역으로의 공동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개별회원국가의 단독 접근보다는 공동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더욱 활발한 교역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교역관계에 있어, 멕시코는 아직 FTA 미협정상태이고 다른 3개국이 한국과 FTA 체결했다

는 점으로만은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중남미지역 간 대외무역의 주력 분야이 자동차 산업 부문에 있어 현재 멕시코에 생산법인이 대부분으로 관세부분에 있어 큰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 하지만, 중남미지역내에는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특히 태평양동맹 국가들이 중남미지역내 GDP 39%, 중남미지역내 역외 대외교역량이 크게 차지한다는 점에서 태평양회원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원활하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 모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친미성향을 지닌 국가들로써 거대한 미국시장으로 진출을 유리할 수 있게 한다.
-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어지러운 대외 무역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동맹 3개 회원국과 모두 FTA 체결한 유리한 입장에서 볼 때, 수출입의 무역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에서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이 아닌 역으로 중남미지역을 통한 미국, 기타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 1. 콜롬비아 현지 무역시장 현황
 - 1) 콜롬비아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 지역 | 기업체명 | 분야 |
|-------------|-----------|------------------------|
| 보고타(Bogota) | LGCNS | IT/SW, ITS 프로젝트 |
| 보고타(Bogota) | LG전자 | IT/전자제품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LIG넥스원 | 방산 프로젝트 / 무기수출 |
| 보고타(Bogota) | SK 홀딩스 | 투자/M&A |
| 보고타(Bogota) | 넥센타이어 | 타이어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누가베스트 | 의료기기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대우건설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
| 보고타(Bogota) | 라인코퍼레이션 | IT/SW |
| 보고타(Bogota) | 범한 PANTOS | 조선, 해운, 무역 |
| 보고타(Bogota) | 삼성SDS | 조선, 해운, 무역 |
| 보고타(Bogota) | 삼성물산 | 원부자재, 중간재 수출입 |
| 보고타(Bogota) | 삼성전자 | IT/전자제품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선텍 인터내셔널 | 차량용 GPS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세라젬 | 건강보조기기 수입판매 |
| 보고타(Bogota) | 제일기획 | 광고대행 |
| 보고타(Bogota) | 태웅로직스 | 해운, 무역 |
| 보고타(Bogota) | 포스코대우 | 원부자재, 중간재 및 기타 소비재 수출입 |
| 보고타(Bogota) | 수출입은행 | EDCF, ODA, 전대금융 |
| 보고타(Bogota) | 한국 타이어 | 타이어 수입유통판매 |
| 보고타(Bogota)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협력 / 한국기업진출지원 |

| 보고타(Bogota) | 현대건설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
|-------------|--------|---------------|
| 보고타(Bogota) | 현대종합상사 | 원부자재, 중간재 수출입 |

콜롬비아 현지 진출 한국 기업



2) 콜롬비아 현지시장 현황

o 콜롬비아 현지시장은 과일, 채소 등을 주로 파는 전통재래시 장과 한국의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Exito(엑시토), Olimpica(올림피카), Carulla(가루야), Cafam(카팜) 등의 대형마 트로 구분할 수 있다.

콜롬비아 주요 대형마트



이들 대형마트에는 식품, 생필품 등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및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에 콜롬
 비아 대형마트 부문에서 가장 큰 매출비중(약42%, '14기준,

www.portafolio.co) 을 차지하는 Exito는 온라인상점에서 또한 일정금액 이상 주문하면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domicilio 방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제품은 전자제품(TV,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이 이들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다. 콜 롬비아는 전자제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 관세로 인하여 다른 품목에 비하여 고가인 편으로 현재까지는 삼성, LG 등 대기업제품이 주로 입점되어 있다. 하지만 삼성 TV 같은 경우 콜롬비아 TV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 고 각 현지 가정에서는 LG TV나 냉장고 같은 제품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기술 력은 현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편이다.
- 하지만 소형가전제품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미국, 유럽 등의 제품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한-콜 FTA 체결 후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전자 미용기기(헤어드라이기 등) 등 전자제품 대부분이 즉시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졌기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소형 가전제품 부문의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콜롬비아 온라인시장 현황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최대의 전자상거래(온라인 마켓) 업체로 Mercado Libre를 통한 거래규모는 2017년 1억5천만건으로 중남미지역내 온라인시장이급성장하고 있다.
- 특히 콜롬비아는 20~40대의 젊은 소비층이 두텁고 소비성향이 강하여 콜롬비아내 온라인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14 콜롬비아 온라인마켓 규모는 1조9천억페소(약76천만달

러)로 주 구매품목은 의류 및 액세서리류이고 전자제품, 웰 빙, 미용제품의 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콜롬비 아내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증가하 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를 통하여 온라인마켓의 규 모는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하여 현지 물류를 위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여 배송기간은 주로 3~5일정도 소요되고 대부분 배송 비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인프라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온라인마켓의 단점 보완으로 온라인시장규모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중남미지역내 최근 한류문화 열풍으로 한국의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찾는 젊은 세 대가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거리 및 시간, 언어 등의 제약으로 현지 시장진출 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판매의 다양한 품목 및 서비스를 개 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켓팅 전략의 다양화로 중남미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출처 : 콜롬비아 보고타 무역관

① Mercadolibre.com(메르까도 리브레)



② Linio.com.co



③ bogota.olx.com.co



2. 중남미지역 투자진출 방안

- 1)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투자진출
 - o CAF(중남미개발은행 Banco de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의 정의
 - '68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5개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중남미 지역개발은행으로 '11 중남미국가 16개, 스페인, 포르투칼로 회원국이 확대됨

- 중남미지역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자원, 도로, 지하철 등 교통 및 교육, 보건 부문에 있어 인프라 개발사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최근 중남미국가들은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중남미개발은행 CAF는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대출금을 제공한다.

- CAF 중점지원 인프라 부문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중남미지역 지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Geosur 프로그램
- 도시 교통정보 데이터 구축
-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운영 시스템 개선
- 국경개발과 통합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관련 프로젝트
- · 중남미인프라통합(IIRSA) 구축
- 멕시코, 콜롬비아 등 10개국가의 인프라 및 교통망 건설
-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개발 등

o 특징

- 공여국 중심의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달리 차입국 중심의 중남미개발은행(CAF)은 비차입국의 투표권이 낮아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대출이 쉽지만 정보공개의 투명 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신속한 행정 처리(승인까지 6~9개월 소요)
- 중남미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은행으로 회원국의 주인의식이 높고 회원국의 CAF 자금 차관에 대한 디폴트 사례가 거의 없고 외채위기에도 모두 상환하였음. 하지만 회원국들 대부

분이 신용도가 낮은 중남미 개발도상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비용은 다른 개발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중남미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출규모는 타 개발은행에 비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이 절대 적으로 증가함

o 중남미개발은행(CAF)를 활용한 투자진출 사례

- CAF 회원국 중 역외국가인 스페인은 중남미지역과 역사적으로 유대관계가 가장 높아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06 처음으로 가입한 국가로 스페인컨설팅기금 조성, 스페인 기업 수출입 금융, 해외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CAF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임
-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CAF 회원가입을 위해 시도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중국의 국영은행을 통해 금융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노력중에 있음. 또한 CAF는 아시아 무역시장으 로의 진출을 위해 홍콩에 아시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검 토중에 있음
- 일본 또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차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본국제협력은행(JBCIC)을 통한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다 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ㅇ 한국의 중남미개발은행 활용 사례 및 진출방안
 - 한국수출은행은 교통,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12 CAF와 협조융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최근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으로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남미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CAF와의 대외협력관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비회원국가도 기술협력 기금 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남미시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금출연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있다고 판단됨

2) 콜롬비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검토의견

가. 과거 콜롬비아 현지시장 진출사례

- (1) 수도 Bogota시에 대규모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함(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2011년 국내 기업 LG CNS는 Bogota시의 교통카드 및 버스 관리시스템(BMS)를 수출하였다. 콜롬비아 수도 Bogota시에 는 현재까지 지하철이 존재하지 않고 트란스밀레니오 (Transmilenio)와 버스로만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이는 2011년부터 약 2년간 한국의 ITS(지능형교통시스 템)을 보고타시 전 트란스밀레니오와 버스에 구축한 것으 로, 총 사업비 규모는 3,000억원이고, 교통카드 발급 및 충 전 등의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류장 버스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하였다.
 -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혼잡한 보고타시에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인구 800만명 규모의 대도시 교통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최대 수주라 볼 수 있다.





Transmilenio(트란스밀레니오)

콜롬비아 보고타시내 버스

- (2) 콜롬비아 해군의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발주
 - ㅇ 2012년 콜롬비아 해군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산 미사일(Korean LIG Nex1) 16기(8,700만 달러)를 장착하였고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사업에 있어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사례임.

* 출처 :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중남미) - KOTRA

- 나. 콜롬비아 현지진출 유망분야 검토의견
- (1) 보안산업
 - ㅇ 콜롬비아는 과거 게릴라와 마약 등으로 중남미지역내에서 도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로 이는 경제 성 장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보고 타시 전역에는 경찰이 다수 배치되는 등 콜롬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치안문제가 완화되고 있다.
 - ㅇ 그러나 여전히 극심한 빈곤문제(인구전체의 46%가 빈곤층, 16% 최극빈층, '11기준)로 강도나 좀도둑 사건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

- 현재 보고타시는 정부기관이나 대형 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보안 장치 가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보안시스템(자물쇠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에서는 보안을 위해 사설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보고타시는 노후환 된 건물 등의 재건축 및 개보수 등 각종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식 건물에는 각종 보안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콜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보안시스템 장비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지진출시장에 있어 한층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한-콜 FTA 보안시스템 관세 양허기준

|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
| 8301401010 | 디지털 도어 록 | 8 | 0 |
| 8525801000 | 텔레비전 카메라 | 5 | 0 |

(2) 화장품・미용산업 진출

- 콜롬비아에는 20~40대의 젊은 세대가 두텁게 차지하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성향에 있어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 각종 미용기구나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수요가점차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최근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한류열풍이 중남미 전역에 퍼져있어서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을 모방하고 싶어하

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은 특히 화장이나 헤어, 패션이 발달한 것으로 중남미 젊은 세대들사이에 인식되고 있어 한국 미용 제품의 품질이나 그 다양성에 있어 고급브랜드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 콜롬비아의 화장품 시장은 '16 기준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 칠레 다음으로 3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6년 화장품분야 매출액은 2,992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12.9% 증가하였다. 주 판매분야는 색조화장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다음으로 눈 화장, 기초화장, 네일제품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 콜롬비아내 화장품 시장은 미국, 유럽 등 수입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이 화장품 시장내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브라질 등의 국가 제품이 크게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아직까지는 일부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복잡한 인증절차와 관세 등으로 큰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콜 FTA 체결로 대부분의 화장품류가 관세 철폐로 인하여 그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향후 콜롬비아 화장품시장으로 진출이 기대된다.

한-콜 FTA 화장품 분야 양허기준

|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
| 3303001000 | 향수 | 6.5 | 0 |
| 3304101000 | 립스틱 | 6.5 | 0 |
| 3304201000 | 아이샤도우 | 6.5 | 0 |
| 3304991000 | 기초화장용 제품류 | 6.5 | 0 |
| 3304992000 | 메이크업용 제품류 | 6.5 | 0 |

콜롬비아 주요 화장품 판매 현지시장 현황



- 3. 중남미국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대응방향
 - 1) 최근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지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대외무역의 효율화를 위한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에 대한 노력 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수출입 업무 처리단계 및 소요시간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 2) 중남미지역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절차 및 시간의 단축이 교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 이다. 특히, 중남미지역 중에서도 콜롬비아의 경우에 있어 비효 율적이고 낙후된 도로환경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와 한국간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콜롬 비아내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육로 운송시간 및 비용을 증가시 켜서 상품의 원활한 수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이와 같은 열악한 운송상의 문제점이 세계화전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교통인프라의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설정하고 신규 도로 건설, 개보수 및 철도 건설, 도시 대중 교통 개선 등에 약 993억페소(5,116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마련하여 내육운송 비용을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4)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의 진출 노선은 46개의 해상노선을 통한 34개의 운송회사와 13개의 항공노선을 갖추고 있다. 이는 19개의 해운회사, 3개의 화물혼재업체(consolidador)와 12개의 항공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항공운송: 12개의 항공편은 콜롬비아와 한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은 없으며, 미국, 캐나다, 칠레,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의 주요 공항을 통하여 연결된다. 이 12개의 항공사(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마르틴에어, 카고룩스항공, 아메리카에어라인, 델타, 라탐, 페덱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아비앙카)는 화물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해상운송: 대서양해안에 위치한 항구(카르타헤나, 바랑키야, 산타마르타)는 파나마와 멕시코의 항구를 주요 연결지로 하고, 평균 26일정도 운송시간이 걸린다. 18개의 해운회사는 태 평양해안에 위치한 항구(Buenaventura)로 직접 운송하는 루 트를 제공하며 평균 23일정도 운송시간을 가진다. 원거리에 위치한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화물은 주로 Buenaventura 항구를 통하여 콜롬비아 국내로 반입된다.
 - * 주요 해운회사 : Compañía Chilena de Navegación-CCNI, 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 Hapag Lloyd, Kawasaky Kisen Kaisha-K-Line, Cosco Container Lines, Mitsul OSK Lines, Hyundai Merchant Marine, Zim Container Service, Yang Ming, Hamburg Sud, Hanjin Shipping, Maersk Line,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Pacific International Lines, Wan Hai Lines, Evergreen, American President Lines, Nippon Yusen Kaisha Line-NYK, Cma-Cgm / 화물혼 재업체(Consolidadores de carga) : Mahe Neutral Shipping, Eculine, Consolcargo

한국과 콜롬비아 간 주요 해상운항 현황

| 출발지 | 목적지 | 연결지 | 운송시간(일) |
|------|--------------------------|-------------------------|---------|
| | Cartagena(카르타헤나) | Manzanillo(멕시코) -파나마 | 26 |
| ᆸᄼᆥᇬ | Barranquilla(바랑키야) | Manzanillo(멕시코) -파나마 | 29 |
| 부산항 | Santa Marta (산타마르타) | Manzanillo(멕시코) -파나마 | 28 |
| | Buenaventura (부에나벤투라) | 직접 | 23 |

- * 출처 : Lineas nabieras procesada por ProColombia.
- 5)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對 콜롬비아 수출을 통한 지 리적한계 극복
 - 이제 전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수 출입통관의 전산화는 대외무역시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선진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이미 1991년부터 EDI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EDI수출통관시스템, EDI수입통관시스템, 관세환급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 및 우범화물선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98년 세계 최초로 전 수출입 업무처리 과정을 전산화하였다.
 -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그 효율성과 업무처리시간 1일이내의 빠른 속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선진기술을 전수받고자 다양한 국가의 세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카자흐스탄(2005), 몽골(2010) 등 11개 국가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수출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알제리, 피지, 요르단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콜롬비아 등 중남미지역은 그 지리적인 한계로 국내 중소기 업이 중남미시장으로 진출하기에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 평균적으로 물류 운송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통 관시간의 단축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 최근 콜롬비아의 중산층 및 젊은층의 증가로 인터넷 보급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계 인터넷 최고속도를 자랑 하는 한국 정보통신 기술에 비하여 아직까지 기술력의 부족 으로 콜롬비아의 정보통신 기술은 많이 뒤쳐져 있다.
- o 한-콜롬비아 FTA 체결의 의미는 단지 대외적으로 상품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비스 무역, 해외직접투자, 공 공구매 및 조달 및 기술협력 등 포괄적인 의미의 양국간의 경제적 동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對콜롬비아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의 선진기술을 콜롬비아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은 양국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큰 견인역할을 할 것이라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http://unal.edu.co
- 2) 콜롬비아 상공부(Min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Dinámica de la Economía Mundial y Comportamiento en Colombia
 Primer trimestre de 2017
 - · Información Exportaciones No Minero Energéticas Noviembre 2015
 - · Informes Económicos, Oficina de Estudios Económicos(Corea del Sur)
- 3) 한국경제 리포트 전비호〈주멕시코대사〉
- 4)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 · Los países con mayor inversión extranjera en Colombia
 - · Ambiente de inversión y oportunidades de Negocio en Colombia
 - · El camino hacia las oportunidades en el mercado asiático
 - · Guía Legal Para hacer negocios en Colombia 2017
- 5) Zonz franca 보고타(http://zonafrancabogota.com)
- 6) Banco de la República. Cálculos OEE MINCIT
- 7) 공화국은행(http://www.banrep.gov.co/) Revista del Banco de República
- 8) 콜롬비아 재무부(http://www.minhacienda.gov.co)
 - · Comisión Intersectorial de estadísticas de Finanzas Públicas
 - Clasificación de entidades del sector público colombiano para la elaboración de Estadísticas de Finanzas Públicas
- 9) KOTRA 국가정보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 10)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www.dian.gov.co
 - · Proceso de importacion de Mercanicias a Colombia Aspectos Aduaneros
- 11) Cámara de Comercio de Bogotá(Bibliotecadigital.ccb.org.co)
 - · Proceso General de Exportación en Colombia : 10 Pasos Para Exportar
 - · Proceso General de Importación en Colombia
- 12) http://www.tlc.gov.co/,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13) www.coomeva.com.co
 - guía para importar / exportar en Colombia

- 14) [행정학]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타 국가 적용
- 15) 중남미3위 내수시장과 협력,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라(한-콜FTA 상세설명자료)
- 16) https://alianzapacifico.net/ ABC-2017 Alianza del Pacífico
- 17)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7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8)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El dinero
- 19) 2016 KOTRA 국가정보 멕시코
- 20)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 21) KOTRA 페루 무역관 페루-아시아 교역규모 5년 연속 증가
- 22) comexperu.org.pe A cuatro años del TLC con Corea del Sur
- 23)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칠레 통관시 유의사항, 한국 제품의 對 칠레 수출 경쟁력 추이, KBC 자체분석
- 24) 변화하는 콜롬비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 25) 중남미개발은행(CAF)를 활용한 중남미시장 진출방안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권기수)
- 26)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콜롬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 27) 한인광장 2016년 제4호 (재)콜롬비아 한인회 정보집
- 28)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태균이시은)
- 29) 중남미3위 소비시장과의 협력한 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라(KOTRA)
- 30)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중남미) KOTRA
- 31) 콜롬비아의 주요산업 광업,교통인프라,IT 中 Global Có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 32) Lineas nabieras procesada por ProColombia.